

2006년 광주, 전남·북 지역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목적 / 3

제2절 조사의 기본 방향 / 5

1. 주요조사 내용/ 5
2. 조사체계/ 6

제3절 표본 설계 / 7

1.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7
2. 표본 틀/ 7

제4절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방법 / 8

1. 자료수집방법/ 8
2. 자료분석/ 8
3. 분석방법/ 8

제5절 표본특성표 / 9

1. 일반인 조사의 표본특성표/ 9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9
 - 2) 경제적 특성/ 12
2.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표본특성표/ 14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4
 - 2) 활동관계적 특성/ 16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제1절 인권의식 관련 / 21

1.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21
2. 우리 지역사회 인권상황의 개선정도/ 23
3.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중복응답)/ 25
4. 지역사회에서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중복응답)/ 27
5.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정도와 장소/ 30

제2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 32

1.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 32
2. 우선적 보호가 필요한 현안/ 34

제3절 인권침해와 관련한 현안 / 35

1.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35
2.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 인식 비율/ 38
 - 2-1 수감자 인권보호 비율/ 39
 - 2-2 경찰의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정도/ 40
 - 2-3 종교재단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의무화에 대한 비율/ 41
 - 2-4 시위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비율/ 42
 - 2-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 비율/ 43
 - 2-6 학교에서 학생 소지품검사 허용정도비율/ 44
 - 2-7 학교 체벌 허용정도 비율/ 45
 - 2-8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비율/ 47
3.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관계자 인식 비율/ 48
 - 3-1 수감자인권보호 비율/ 49
 - 3-2 경찰의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정도/ 50
 - 3-3 종교재단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의무화에 대한 비율/ 51
 - 3-4 시위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비율/ 52
 - 3-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비율/ 53
 - 3-6 학교 체벌 허용정도 비율/ 54
 - 3-7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비율/ 55
 - 3-8 학교에서 학생 소지품검사 허용정도비율/ 56

제4절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 57

1.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57
 2. 차별현안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 인식비율/ 60
 - 2-1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화 정도/ 61
 - 2-2 비정규직 대우문제/ 62
 - 2-3 장애인용 시설설치를 위한 세금감수 허용정도/ 63
 - 2-4 나이제한의 부당성/ 64
 - 2-5 장애인에 대한 혜택정도/ 65
 - 2-6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혜택정도/ 66
 - 2-7 출신학교 차이 인정정도/ 67
-

2-8 여성할당제 인정정도/	68
2-9 동성애자 인정정도/	69
3. 차별현안 심각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인식비율/	70
3-1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화 정도/	71
3-2 장애인용 시설설치를 위한 세금감수 허용정도/	72
3-3 장애인에 대한 혜택정도/	73
3-4 비정규직 대우문제/	74
3-5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혜택정도/	75
3-6 나이제한의 부당성/	76
3-7 출신학교 차이 인정정도/	77
3-8 여성할당제 인정정도/	78
3-9 동성애자 인정정도/	79
제5절 인권문제 유형에 대한 인식 /	80
1.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80
2. 차별유형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83
3.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유형(중복응답)/	86
4.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중복응답)/	90
제6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 대한 인식 /	92
1. 지역사무소의 위상에 대한 인지정도/	92
2.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지역문제의 대응방안/	93
3. 국가인권위원회 인지정도/	96
4. 상담전화 인지여부와 경로/	97
5.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98
제7절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	100
1. 인권교육의 형식/	100
2. 인권교육이 우선 필요한 집단(중복응답)/	101

■ 부 록

인권의식조사 설문지(시민·사회단체용)

인권의식조사 설문지(일반시민용)

표 목차

- <표 1-1> 주요조사 내용/ 5
 - <표 1-2> 조사체계/ 6
 - <표 1-3> 일반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1
 - <표 1-4> 일반인 응답자의 경제적 특징/ 13
 - <표 1-5>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15
 - <표 1-6>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활동 관계적 특징/ 17
 - <표 2-1> 인권문제 심각성 정도/ 21
 - <표 2-2> 최근 1년간 인권상황 개선정도/ 23
 - <표 2-3> 인권문제나 차별이 심각한 기관 1순위/ 26
 - <표 2-4> 인권문제나 차별이 심각한 기관 2순위/ 26
 - <표 2-5>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1순위/ 29
 - <표 2-6> 인권보호가 시한 집단/ 29
 - <표 2-7> 인권문제 발생장소 인지여부/ 30
 - <표 2-8> 인권문제가 발생한 장소/ 31
 - <표 2-9> 논란중인 인권현안/ 32
 - <표 2-10> 인지하고 있는 정책 문제/ 33
 - <표 2-11> 우선적 보호사안/ 34
 - <표 3-1> 인권침해 관련현안에 대한 의식/ 37
 - <표 3-2> 수감자 인권보호 비율/ 39
 - <표 3-3> 경찰의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정도/ 40
 - <표 3-4> 종교재단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의무화에 대한 비율/ 41
 - <표 3-5> 시위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비율/ 42
 - <표 3-6>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비율/ 43
 - <표 3-7> 학교에서 학생 소지품검사 허용정도비율/ 44
 - <표 3-8> 학교 체벌 허용정도 비율/ 46
 - <표 3-9>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비율/ 47
 - <표 3-10> 수감자 인권보호 비율/ 49
 - <표 3-11> 경찰의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정도/ 50
-

<표 3-12> 종교재단 학교에서의 종교의식 의무화에 대한 비율/	51
<표 3-13> 시위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비율/	52
<표 3-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 비율/	53
<표 3-6> 학교 체벌 허용정도비율/	54
<표 3-7>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비율/	55
<표 3-8> 학교에서 학생 소지품검사 허용정도비율/	56
<표 4-1>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59
<표 4-2>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화 정도/	61
<표 4-3> 비정규직 대우문제/	62
<표 4-4> 장애인용 시설설치를 위한 세금감수 허용정도/	63
<표 4-5> 나이제한의 부당성/	64
<표 4-6> 장애인에 대한 혜택정도/	65
<표 4-7>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혜택정도/	66
<표 4-8> 출신학교 차이 인정정도/	67
<표 4-9> 여성할당제 인정정도/	68
<표 4-10> 동성애자 인정정도/	69
<표 4-11>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화 정도/	71
<표 4-12> 장애인 시설 의무설치에 다른 세금감수/	72
<표 4-13> 장애인에 대한 혜택/	73
<표 4-14> 비정규직 대우문제/	74
<표 4-15>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혜택정도/	75
<표 4-16> 나이제한의 부당성/	76
<표 4-17> 출신학교 차이 인정정도/	77
<표 4-18> 여성할당제 인정정도/	78
<표 4-19> 동성애자 인정정도/	79
<표 5-1>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인식 1순위/	81
<표 5-2>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인식 2순위/	82
<표 5-3> 차별유형에 대한 인식 1순위/	84
<표 5-4> 차별유형에 대한 인식 2순위/	85
<표 5-5>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유형 1순위/	88

-
- <표 5-6>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유형 2순위/ 89
 - <표 5-7>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 1순위/ 91
 - <표 5-8>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 2순위/ 91
 - <표 6-1> 지역사무소의 지위/ 92
 - <표 6-2> 지역사무소의 역할/ 93
 - <표 6-3> 지역사무소의 대응방안/ 95
 - <표 6-4> 국가인권위원회 인지경로/ 96
 - <표 6-5> 상담전화 인지여부/ 97
 - <표 6-6> 상담전화 인지경로/ 97
 - <표 6-7> 지역사무소의 할 일/ 99
 - <표 6-8>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99
 - <표 6-9> 확대되어야 할 일/ 99
 - <표 7-1> 인권교육 관련/ 100
 - <표 7-2> 인권교육이 우선 필요한 집단 1순위/ 102
 - <표 7-3> 인권교육이 우선 필요한 집단 2순위/ 102
-

□□

□□



제 1 장 조 사 개 요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목적

인권(人權)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개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어왔다. 우리사회에서 ‘인권’을 말하면, 사회를 비판하는 것,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어지럽히는 것 등의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 때문이며, 어느 곳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부산·광주지역사무소가 설립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민주적, 반인권적 문화의 청산과 인간다운 삶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생활시설 인권현황을 파악하는 활동들이 전개됐음에도,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의 긴박함, 돌발 상황 그리고 긴급 상황에 대한 우선대응 등의 현실적 어려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 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는 현안 인권 문제들을 기대한 만큼 개선하지 못하고 부분적 일시적 활동에 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요소이다. 이는 광주 지역 사무소 설립이후의 활동들을 점검하고, 지역사무소의 향후방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일반인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를 기획하였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 지역민의 국내, 지역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의식수준 및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 ▲ 지역 내 인권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현안 및 인권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 지역 내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지역 내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인권문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광주지역사무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 ▲ 지역사무소 개소 1년의 시점에서 지역사무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사무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 조사시점에서 지역민의 인권수준을 파악하고, 인권수준 개선을 위한 대안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 지역의 기존 각종 실태조사와 실증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지역의 인권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 지역민, 인권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식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원년 자료로 활용한다.

제2절 조사의 기본 방향

1. 주요조사 내용

<표 1-1> 주요조사 내용

조사 내용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 인권의식 관련 1.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2. 우리 지역사회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 3.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 4. 지역사회에서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5.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정도와 장소	◎	◎
◎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 2. 우선적 보호가 필요한 현안	◎	◎
◎ 인권침해와 관련한 현안 1.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2.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비율	◎	◎
◎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1.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2.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비율	◎	◎
◎ 인권문제 유형에 대한 인식 1.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인식 2. 차별유형에 대한 인식 3. 지역사회에서의 차별유형 4.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	◎	◎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 대한 인식 1. 지역사무소의 위상에 대한 인지정도 2.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지역문제의 대응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인지정도 4. 상담전화 인지여부와 경로 5.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	◎
◎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1. 인권교육의 형식 2. 인권교육이 우선 필요한 집단(중복응답)	◎	◎

2. 조사체계

<표 1-2> 조사체계

조사체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조사대상	지역 내 15세 이상 성인남녀	지역 내 주요 시민단체 상근간부 및 대표
유효 응답자수	650명	2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3.1%	
조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 개별면접	설문지 조사와 전화설문
실사수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제3절 표본 설계

1. 표본추출방법의 개요

본 조사에서 ▲ 일반인은 광주, 전남·북 지역을 총 11개의 층으로(광주 5개구, 전남 3권역과 전북 3권역) 층화하여 계통추출 함. ▲ 시민·사회단체 조사는 사전에 확보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명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2. 표본 틀

1) 일반인

본 조사에서 일반인은, 통계청이 관리하고 있는 조사구 리스트 중에서 시·군·구 단위지역 통계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관할지역인 광주, 전남, 전북지역민을 대상으로 표본 틀을 마련하고, 이중 650명을 추출하여 620사례를 분석함.

2)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조사는 사전에 확보된 단체 및 관계자의 명단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으로 조사를 실시함.

제4절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방법

1. 자료수집방법

- ▲ 일반인은,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타계식 대인면접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우편설문을 발송하고,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조사함.

2. 자료 분석

- ▲ 자료검증과 전화보완조사를 거친 최종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통계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분석.

3. 분석방법

- 빈도분석
- 기술통계 분석
- 상관검사
-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제5절 표본 특성표

1. 일반인 조사의 표본 특성표

1) 인구사회학적 특징

- 일반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3>과 같다.
- 전체 응답자 620명 중 남자 321명 51.8%, 여자 299명 48.3%을 차지하며 응답자의 성비는 고르게 나타남.
- 종교는, 없음 258명(42.0%), 기독교 193명(31.4%), 불교 82명(13.3%), 유교 6명(1.0%), 천도교 3명(0.5%)로 나타남. 이를 다시 종교의 유·무로 합산하면 있음 347명(58%), 없음 258명(42.0%)이다. 이는 광주, 전남·북 지역민 10명 중 6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혼인상태에서는, 응답자 607명 중 기혼 284명(46.0%), 미혼 315명(51.1%), 이혼 4명(0.6%), 사별 8명(1.3%), 동거 5명(0.8%)로 나타남. 이를 혼인 유·무로 합산하면 기혼 48.9%, 미혼 51.1%로 미혼이 2.2%가 높게 나타남.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를 예측할 수 있다.
- 학력은, 응답자 604명 중 고졸이하 296명(49.0%), 대졸이하 262명(43.4%), 중졸이하 29명(4.8%), 초졸 이하 9명(1.9%), 대학원졸 8명(1.3%) 순으로 나타남. 이는 광주, 전남·북 지역민의 학력 수준은 중졸이상에서 대학 졸이 전체의 92.4%를 차지함.

- 응답자 604명 중 연령대는, 30대(40.4%), 40대 127명(20.5%), 50대(16.8%), 20대 66명(10.7%), 60대 49명(7.7%), 70대 이상 3명(0.5%)로 나타남. 광주, 전남·북 지역민 중에는 30대에서 50대가 77.7%로 가장 많고, 20대,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조사의 시기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 활동인구 순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응답자 610명의 출신지역을 보면, 광주 233명(37.7%), 전북 138명(22.3%), 전남 196명(31.7%), 기타 51명(8.3%)로 나타남. 지역적인 분포는 고르게 나타남.

<표1-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321	51.8
	여	299	48.3
	합 계	620	100.0
종 교	기독교	193	31.4
	불 교	82	13.3
	카톨릭	60	9.8
	유 교	6	1.0
	원불교	3	0.5
	천도교	3	0.5
	없 음	258	42.0
	기 타	10	1.6
	합 계	615	100.0
혼 인 상 태	기 혼	284	46.0
	미 혼	315	51.1
	이 혼	4	0.6
	사 별	8	1.3
	동 거	5	0.8
	기 타	1	0.2
	합 계	617	100.0
학 력	초졸 이하	9	1.5
	중졸 이하	29	4.8
	고졸 이하	296	49.0
	대졸 이하	262	43.4
	대학원 이상	8	1.3
	합 계	604	100.0
연 령	20대	66	10.7
	30대	250	40.4
	40대	127	20.5
	50대	104	16.8
	60대	49	7.7
	70대 이상	3	0.5
	합 계	619	100.0
출 신 지 역	광 주	233	37.7
	전 북	138	22.3
	전 남	196	31.7
	기타지역	51	8.3
	합 계	618	100.0

2) 경제적 특징

- 응답자의 경제적 특징은 <표 1-4>와 같다.
- 직업별 분류에서는, 학생 134명(21.7%), 판매/서비스 104명(16.8%), 사무직 95명(15.4%), 자영업 74명(12.0%), 주부 55명(8.9%), 전문·관리·경영직 53명(8.6%)이며, 무직 67명(10.8%)을 차지함.
- 고용형태에 대한 응답자 517명 중 정규직 194명(37.5%), 비정규직 117명(22.6%)임. 학생, 전업주부가 포함된 기타는 206명(39.8%)으로 나타남.
- 일반민들의 소득별 분포를 보면, 200만원 이하 268명(46.2%), 200만원 이상 174명(29.5%), 400만원 이상 84명(9.2%), 기타 62명(10.5%)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 전남·북 지역민의 경제적 특성을 요약하면, 판매·서비스·자영업(28.8%), 학생(21.7%), 사무직(15.4%), 생산·기능·노무직(12.0%) 순이며, 고용형태에서도 정규직(37.5%), 비정규직(22.6%), 기타(39.8%)이며, 소득에서도 200만원 이하가 45.6%, 200만원 이상 43.8%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지역의 경우,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을 배후로 형성된 도시이므로, 인근 농·어촌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의 인구가 학교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 중 하나도 이촌향도의 영향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과 함께 일자리가 대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농·촌의 농·번기와 농·한기의 영향이 원인 중의 하나로 예측할 수 있음.
- 월 소득에서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 평균소득 3,568,103원을 기준으로 보면 85.7%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광주, 전남·북 지역민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임을 예측할 수 있음.

<표 1-4> 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빈도	백분율(%)
직 업	농/축/수산/광업	13	2.1
	판매/서비스종사자	104	16.8
	생산/기능/노무직	23	3.7
	자영업	74	12.0
	사무직	95	15.4
	전문/관리/경영직	53	8.6
	주 부	55	8.9
	학 생	134	21.7
	무직/퇴직/기타	67	10.8
	합 계	618	100.0
고용형태	정규직	194	37.5
	임시직	47	9.1
	일용직	25	4.8
	계약직	45	8.7
	기 타	206	39.8
	합 계	517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74	12.6
	100~149만원	99	16.8
	150~199만원	95	16.2
	200~249만원	79	13.4
	250~299만원	56	9.5
	300~349만원	39	6.6
	350~399만원	30	5.1
	400만원 이상	54	9.2
	기 타	62	10.5
	합 계	588	100.0

2.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표본특성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와 연대 네트워크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함.

경제적 특성을 배제하고 단체활동 관계적 특성에 활동기간, 직책, 회원수, 상근자수를 포함하여 우편설문을 실시하였음. 광주, 전남·북 지역 70여개 단체에 총 200부를 발송하여 110부를 취합하였으며, 취합율은 55%이며, 기술통계를 위한 사례수로 적합하여 110명의 설문지로 자료를 분석하였음.

1) 인구 사회학적 특징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5>와 같다.
- 성별은, 응답자 110명 중 남자 47명(43.1%), 여자는 63명(57.8%)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6명(14.7%)이 많음.
- 종교는, 기독교 46명(42.2%), 없음 27명(24.8%), 가톨릭 17명(15.6%), 불교 11명(10.0%) 순이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중 67.9%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즉, 10명 중 6~7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혼인상태는, 기혼 68명(62.4%), 미혼 37명(33.9%), 이혼 3명(2.8%), 사별(10.9%)로 나타남. 이를 합산하면, 기혼 66.1%, 미혼 33.9%이며, 10명 중 6~7명은 기혼자임을 예측할 수 있음.
- 응답자 109의 연령은, 30대 53명(48.6%), 20대 27명(24.8%), 40대 24명(22.0%), 50대 5명(3.7%), 60대 이상 1명(0.9%)으로 나타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73.4%는 20~30대의 연령대임을 예측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맥락과 흐름으로 가장 활발한 행동을 할 수 있는 40~50대는 25.7%임.
- 출신지역별 분포를 보면, 광주 64명(58.7%), 전북 11명(10.1%), 전남 31명(28.4%), 기타지역 3명(2.7%)으로 나타남.

<표 1-5>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백분율(%)	비 고
성 별	남	47	43.1	
	여	63	57.8	
	합 계	110	100	
종 교	기독교	46	42.2	
	불 교	11	10.1	
	가톨릭	17	15.6	
	없 음	27	24.8	
	기 타	8	7.3	
	합 계	109	100.0	
혼 인 상 태	기 혼	68	62.4	
	미 혼	37	33.9	
	이 혼	3	2.8	
	사 별	1	0.9	
	합 계	109	100.0	
연 령	20대	27	24.8	
	30대	53	48.6	
	40대	24	22.0	
	50대	4	3.7	
	60대 이상	1	0.9	
	합 계	109	100	
출 신 지 역	광주	64	58.7	
	전북	11	10.1	
	전남	31	28.4	
	기타지역	3	2.7	
	합 계	109	100.	

2) 활동 관계적 특성

- 응답자 101명의 활동기간에서는 6년 이하 28명(27.7%), 3년 이하 27명(27.7%), 1년 이하 17명(16.8%), 9년 이하(12.9%), 18년 이상(7.9%), 15년 이하 2명(2.0%) 순으로 나타남. 이는, 광주, 전남·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활동기간은 현재 2~9년까지에 67.3%를 차지하며, 18년 이상의 7.9%는 평생을 시민·사회단체에 관계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직책은, 실무간사 42명(44.7%), 실무책임자 38명(40.4%), 대표 14명(14.9%)으로 나타남. 여기에서 실무책임자는 팀장, 부장, 사무국장 및 처장을 포함하고 있음.
- 정식으로 등록되어 회비 납부 회원수는, 100명 이하 11곳(28.6%), 450명 이상이 15곳(25.4%), 50명 이하 15곳(25.4%), 150명 이상~400명이 21.1%를 차지함. 450명 이상의 회원이 확보된 곳은 YMCA나 YWCA 등이며, 대부분의 경우 100명 이하가 54%를 차지하고 있음.
- 상근활동가 수는, 3명 이하 38명(40.9%), 6명 이하 39명(41.9%)이며, 18명 이상이 11명(12.8%)으로 나타남. 이는 광주, 전남·북 지역 대부분의 단체들 82.8%에서는 상근자 6명 이하가 활동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이를 종합하여 보면 광주, 전남·북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경우, 활동기간 평균 3년, 회원수 평균 86명, 상근자수 평균 5명임을 예측할 수 있음.

<표 1-6> 활동 관계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백분율(%)	비 고	
활동기간	1년 이하	17	16.8	평균 =3.0198
	3년 이하	27	26.7	
	6년 이하	28	27.7	
	9년 이하	13	12.9	
	12년 이하	6	5.9	
	15년 이하	2	2.0	
	18년 이상	8	7.9	
	합 계	101	100.0	
직 책	실무 간사	42	44.7	
	실무책임자	38	40.4	
	대 표	14	14.9	
	합 계	94	100.0	
회원수	50명 이하	15	25.4	평균 86명
	100명 이하	11	28.6	
	150명 이하	4	6.8	
	200명 이하	4	6.8	
	250명 이하	2	3.4	
	300명 이하	3	2.7	
	350명 이하	1	1.4	
	400명 이하	4	6.8	
	450명 이상	15	25.4	
합 계	59	100.0		
상근자수	3명 이하	38	40.9	평균=5명
	6명 이하	39	41.9	
	9명 이하	1	1.1	
	12명 이하	1	1.1	
	15명 이하	2	2.2	
	18명 이상	11	12.8	
	합 계	93	100.0	

□□

□□



제2장 조사결과 요약

제2장 조사결과 요약

제1절 인권의식 관련

1.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 전반적인 인권문제의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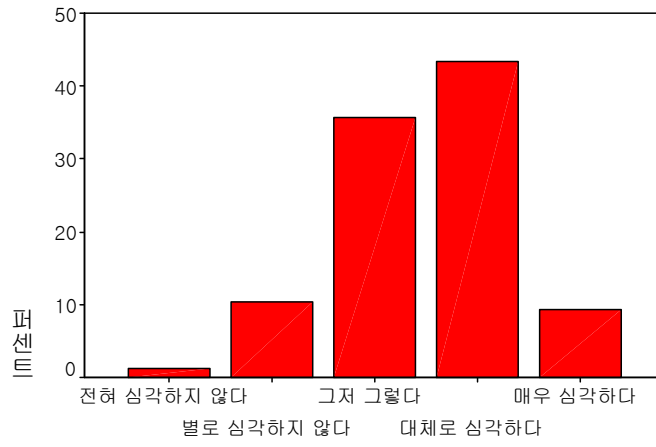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의 심각성 인식정도에 대한 응답을 합계한 결과, 일반인 응답자 626명 중 330명(52.8%)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73명(11.5%)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함.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반인의 10명 중 5명은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반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대체로 심각하다 64명(59.3%), 매우 심각하다 25명(23.1%), 그저 그렇다 16명(14.8%), 별로 심각하지 않다 3명(2.8%)으로 나타남. 이는 시민 관계자의 경우 82.4%가 지역사회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 일반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간에는 29.6%의 차이를 보이나, 공히 50% 이상이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표 2-1> 인권문제의 심각성 정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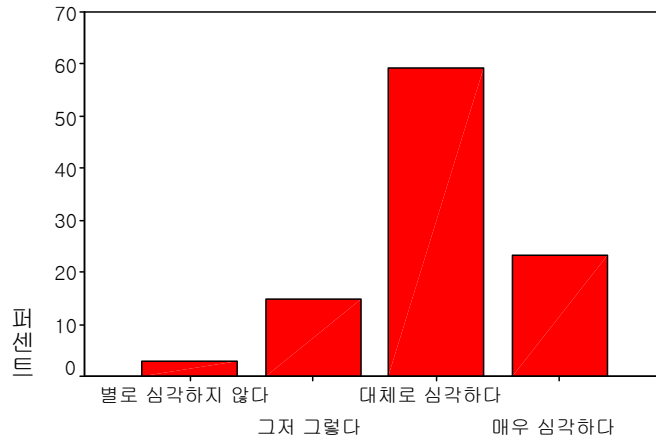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인권 문제의 심각성	전혀 심각하지 않다	8	1.3	-	-
	별로 심각하지 않다	65	10.4	3	2.8
	그저 그렇다	223	35.6	16	14.8
	대체로 심각하다	272	43.5	64	59.3
	매우 심각하다	58	9.3	25	23.1
	합 계	626	100.0	108	100.0

인권문제의 심각성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 지역사회 인권상황의 개선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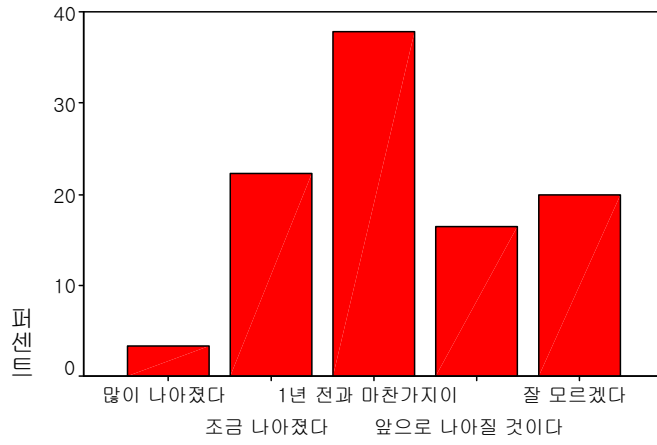
-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개소(2005. 10. 12)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힘.
- 최근 1년간 인권상황의 개선도 평가에 대한 응답을 합계한 결과에서 일반인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237명(37.9%), 조금 나아졌다 139명(22.2%)으로 응답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1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39명(35.8%), 조금 나아졌다 32명(29.4%), 잘 모르겠다 13명(11.9%)으로 나타남.
- 이는 일반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의 응답에서 차이는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조금 나아졌다와 앞으로 나아졌다는 합산한 결과, 일반인 38.7%,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8.7%로 26.5%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2-2> 최근 1년 간 인권상황 개선도 평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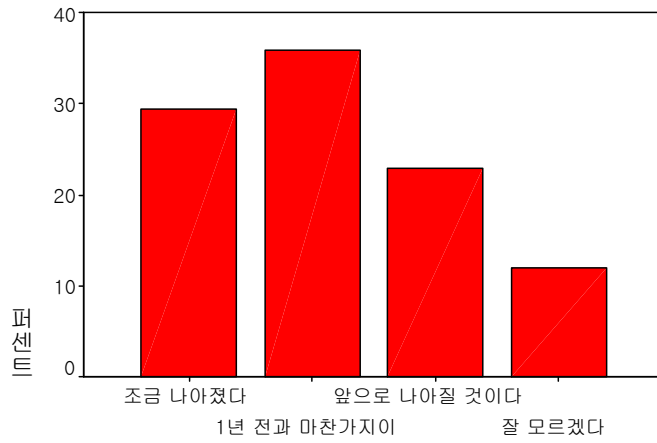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최근 1년간 인권상황 개선도	많이 나아졌다	21	3.4	-	-
	조금 나아졌다	139	22.2	32	29.4
	1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237	37.9	39	35.8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103	16.5	25	22.9
	잘 모르겠다	125	20.0	13	11.9
	합 계	625	100.0	109	100.0

1년 전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의 비교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관

-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심각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중복응답의 결과는 <표 2-3-1>, <표 2-3>과 같다.
- 인권침해나 차별이 가장 심각한 기관에 대해 일반인의 경우 군대 180명(29.2%), 검찰·경찰 121명(19.6%), 국가정보원 28명(4.5%),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90명(15.4%) 순으로 나타남. 이는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68.7%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는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103명(16.7%)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순위에서도 검찰·경찰 91명(15.6%), 군대 90명(15.4%),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90명(15.4%),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84명(14.4%)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29명(26.6%), 검찰·경찰 21명(19.3%), 군대 17명(15.6%),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15명(13.8%),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15명(13.8%) 순으로 나타남. 이를 다시 합산하면, 검찰·경찰·군대·구금시설·국가정보원(52.4%)이며,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26.6%),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13.8%)의 순으로 나타남. 아울러 2순위에서도 검찰·경찰·군대·구금시설·국가정보원(52.3%),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16.8%), 기업 또는 법인 개인 회사(9.3%)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 68.7%,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2.4%가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응답결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의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변화와 모색이 시급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2-3> 인권문제나 차별이 심각한 기관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문제 차별이 심각한 기관	군 대	180	28.3	17	15.6
	검찰·경찰	121	19.6	21	19.3
	국가정보원	28	4.5	4	3.7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82	13.3	15	13.8
	요양원·복지원 등 각종 복지수용시설	103	16.2	29	26.6
	방송 및 언론기관	27	4.4	1	0.9
	기업 또는 법인 개인회사	21	3.4	3	2.8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24	3.9	15	13.8
	지방자치단체	15	2.4	1	0.9
	각종 사회단체	4	0.6	1	0.9
	기 타	11	1.8	2	1.8
	합 계	616	100.0	109	100.0

<표 2-4> 인권문제나 차별이 심각한 기관 (2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문제 차별이 심각한 기관	군 대	90	15.4	23	12.1
	검찰/경찰	91	15.6	23	21.5
	국가정보원	25	4.3	4	3.7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90	15.4	16	15.0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84	14.4	18	16.8
	방송 및 언론기관	52	8.9	7	6.5
	기업 또는 법인 개인회사	43	7.4	10	9.3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57	9.0	9	8.4
	지방자치단체	18	2.8	5	4.7
	각종 사회단체	24	4.1	1	0.9
	기 타	10	1.8	1	0.9
	합 계	584	100.0	107	100.0

4. 지역사회에서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 우리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중복응답의 결과는 <표 2-5>, <표 2-6>와 같다.
- 일반인의 경우, 장애인 243명(38.5%), 비정규직 노동자 87명(13.8%), 노인·아동·청소년·여성 102명(16.2%), 각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56명(8.9%),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42명(6.7%) 순으로 나타남.
- 2순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102명(16.4%), 외국인 노동자 89명(14.0%), 비정규직 노동자 78명 (12.5%), 장애인 76명(12.2%)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1순위는 장애인 35명(32.1%), 비정규직 노동자 14명(12.8%), 각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4명(12.8%), 노인·아동·청소년·여성 18명(16.5%),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8명(7.3%), 외국인 노동자 8명(7.3%) 순으로 나타남.
- 2순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29명(26.6%), 노인·아동·청소년·여성 23명(21.2%), 장애인 15명(13.8%), 각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15명(13.8%),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10명(9.2%)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히 1순위에서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순위에서는 일반인은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이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특히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히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가 시급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이는 우리사회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져온 결과의 한 단면이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이 문항의 응답결과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시민 59.5%, 시민·사회단체 53.1%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인 노인·아동·청소년·여성·극빈자·노숙자에 대해 인권보호가 시급하다고 답하고 있으며, 공히 장애인 인권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음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시기에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 반응성의 결과가 그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투쟁, 자립생활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해온 소속회원들의 투쟁의 결과가 원인 중의 하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2-5>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보호가 시급한 집단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수용자	30	4.8	6	5.5
	각종 복지시설 수용자	56	8.9	14	12.8
	장애인	243	38.5	35	32.1
	비정규직 노동자	87	13.8	14	12.8
	여 성	30	4.8	2	1.8
	외국인 노동자	35	5.5	8	7.3
	노 인	32	5.1	2	1.8
	아 동	28	4.4	11	10.1
	청소년	12	1.9	3	2.8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21	3.3	5	4.6
	군 인	12	1.9	-	-
	동성애자	1	0.2	-	-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42	6.7	8	7.3
	기 타	2	0.3	1	0.9
합 계	631	100.0	109	100.0	

<표 2-6>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 (2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보호가 시급한 집단	교도소 등 구금시설 수용자	25	4.0	4	3.7
	각종 복지시설 수용자	51	8.2	15	13.8
	장애인	76	12.2	15	13.8
	비정규직 노동자	78	12.5	8	7.3
	여 성	24	3.8	5	4.6
	외국인 노동자	89	14.0	29	26.6
	노 인	50	8.0	4	3.7
	아 동	53	8.5	5	4.6
	청소년	24	3.9	9	8.3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27	4.2	3	2.8
	군 인	18	2.8	2	1.8
	동성애자	4	0.6	-	-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102	16.4	10	9.2
	기 타	2	0.3	-	-
합 계	623	100.0	109	100.0	

5.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와 장소

1) 우리지역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의 인지여부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인지여부에서, 일반인은 알고 있다 132명(21.3%), 모른다 482명(78.5%)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알고 있다 70명(67.3%), 모른다 34명(32.7%)로 나타남.

<표 2-7>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인권 문제가 발생한 곳	알고 있다	132	21.5	70	67.3
	모른다	482	78.5	34	32.7
	합 계	614	100.0	104	100.0

○ 아울러 알고 있는 곳에 대한 연속질문을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하여 재분류 정리한 결과는 <표 2-8>와 같다.

○ 일반인 중 알고 있다고 응답한 132명에게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 2-8>와 같음.

○ 경찰·검찰·군대 24.2%, 각종복지시설의 수용자·요양원 21.2%,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노사관계 18.9%,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17.4%,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12%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경찰·검찰·군대 20.1%, 초·중·고교 및 교육기관 20.1%, 각종 복지시설의 수용자·요양원 16.5%,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13.7% 순으로 응답함.

- 일반인의 응답결과를 합계하면, 국가 구금시설(경찰·검찰·군대+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을 39.3%이며,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노사관계 18.9%,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15.1%임.
-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구금시설(경찰·검찰·군대+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33.8%,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20.1%,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노사관계 13.79% 순으로 분류해보면,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의 응답 결과는 두 집단 공히 동일함을 보이고 있음.
-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이라고 대답한 대부분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화학교를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8>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인권 문제가 발생한 곳	경찰·검찰·군대	30	24.2	22	20.1
	각종 복지시설의 수용자요양원	28	21.2	18	16.5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노사관계	25	18.9	15	13.7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23	17.4	22	20.1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20	15.1	15	13.7
	집회 및 시위현장	4	0.3	10	9.14
	기 타	2	0.1	7	6.4
	합 계	132	100.0	109	100.0

제2절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 우리사회의 인권현안과 정책

- 인권문제에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인지정도의 결과, 일반인은 알고 있다 313명(50.2%), 모른다 311명(49.8%)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알고 있다 85명(78.7%), 모른다 23명(21.3%)의 결과로 나타남.

<표 2-9> 논란 중인 인권현안 (단위 :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현안	알고 있다	313	50.2	85	78.7
	모른다	311	48.39	23	21.3
	합 계	624	100.0	108	100.0

- 아울러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결과는 <표 2-10>와 같다
- 일반 응답자 313명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 정책현안의 결과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된 사항 50.9%,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사항 18.9%,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 15.1%로 나타남.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 50%를 선회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동·고용정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르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88명의 응답결과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항 31.8%,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된 사항 31.8%, 국가보안법폐지와 관련한 사항 21.6% 순으로 나타남. 이를 다시, 비정규직문제·차별문제로 합산하면 63.6%가 응답함.

<표 2-10> 인지하고 있는 정책 현안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알고 있는 정책 현안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사항	60	18.9	19	21.6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항	40	12.6	28	31.8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된 사항	162	50.9	28	31.8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	48	15.1	8	9.1
	기 타	3	2.5	5	5.7
	합 계	313	100.0	88	100.0

2.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항

-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안에 대한 결과는 <표 2-11>과 같다.
- 일반인은, 개인정보 보호 207명(33.3%), 사생활 보호 196명(31.5%), 신체의 자유 117명(18.8%)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34명(30.9%), 신체의 자유 28명(25.5%), 사생활 보호 20명(18.2%), 양심의 자유 20명(18.2%)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이나 시민·사회단체관계자 공히, 개인정보를 1순위로 응답한 결과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무자비한 유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대응방식과 법적·제도적 정책수립이 시급함을 예측할 수 있음.

<표 2-11>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안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우선적으로 보호 해야 할 사안	신체의 자유	117	18.8	28	25.5
	사생활 자유	196	31.5	20	18.2
	개인정보 보호	207	33.3	34	30.9
	양심의 자유	52	8.4	20	18.2
	종교의 자유	4	0.6	2	1.8
	집회 및 시위의 자유	34	5.5	3	2.7
	기 타	12	1.9	3	2.7
합 계		622	100.0	110	100.0

3. 인권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1) 인권침해 현안에 대한 인식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권침해 현안과 관련된 문항은 8개로, 그간에 우리사회에서 쟁점화되었거나, 되고 있는 또는 가능성이 있는 현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현안을 5점 리커트 척도화해서, 인권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 8인, 법학연구자 3인, 대학원 박사과정 6인(총 21명)에게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만을 검증 받았으며, 일반인 10인, 학생 20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인(총 37명)에게 사전 테스트만을 실시하였고, 표준화되지 않는 척도임을 밝힘. 이는 앞으로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밝힘.

- 인권침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문항을, 매우 동의한다·동의한다는 동의한다, 중간이다, 매우 반대한다·반대한다는 반대한다로 재분류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82.4%), 경찰 불시검문 허용반대(75.1%),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 하는 것은 옳지 않음(69.8%),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67.3%),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53.8%),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9.8%),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39.2%),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53.8%),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14.9%)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는,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89.9%), 경찰 불시 검문 허용반대(87.1%),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78.0%),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음(77.1%),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61.1%),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0.5%),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34.2%),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37.6%) 로 나타남.

- 아울러, 일반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응답에서 주목할 점은, 학교와 관련된 인권침해 두 현안 중 종교의식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목적의 체벌에서는, 일반인은 53.8%,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4.2%로 19%의 차이를 보이며,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병역거부는 공히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인 14.9%,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7.6%로 그 차이는 22.7%로 나타남.

- 이러한 차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의 하나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정책의 원칙없는 변화와 전통적으로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적 분위기 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병역거부문제에 대해, 결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동일하나 22.7%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병역의무에 대한 양심적 거부가 악용될 소지와 병역특례에 대한 사회적 문제 등이 그 원인중 하나라고 예측할 수 있음. 아직까지 우리지역사회에서는 교육문제,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 등을 통해서 다수가 합의하는 수준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3-1> 인권침해관련 현안에 대한의식 (단위: 명, %)

인권침해 현안에 대한 의식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동의 한다	중간 이다	동의 하지 않는다	비고	동의 한다	중간 이다	동의 하지 않는다	비고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335 (53.8)	177 (28.4)	111 (17.8)	n= 623	37 (33.9)	20 (18.3)	52 (47.7)	n= 109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6 (39.8)	146 (23.6)	396 (36.6)	n= 618	66 (60.5)	24 (22.0)	19 (17.4)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444 (69.8)	91 (14.6)	87 (14)	n= 622	84 (77.1)	15 (13.8)	10 (9.1)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83 (13.3)	71 (11.5)	466 (75.1)	n= 620	7 (6.4)	7 (6.4)	95 (87.1)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 할 수 있다.	95 (14.9)	109 (17.6)	415 (67.0)	n= 619	41 (37.6)	25 (22.9)	43 (39.5)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510 (82.4)	85 (13.7)	25 (4.0)	n= 620	98 (89.9)	10 (9.2)	1 (0.9)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243 (39.2)	200 (32.3)	176 (28.4)	n= 619	66 (61.1)	32 (29.6)	10 (9.2)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417 (67.3)	156 (25.2)	47 (7.6)	n= 620	85 (78.0)	21 (22.0)	-	

2)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비율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순위별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2>, <표 3-3>, <표 3-4>, <표 3-5>, <표 3-6>, <표 3-7>, <표 3-8>, <표 3-9>와 같음

■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 보장

○ 일반인 응답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보장에 동의한다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2>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317(57.2)	99(31.2)	159(50.2)	40(12.6)	14(4.4)	5(1.6)
	여	295(42.8)	74(25.1)	171(58.0)	44(14.9)	3(1.0)	3(1.6)
	합 계	612(100)	173(28.3)	330(53.9)	84(13.7)	17(2.8)	8(1.3)
연 령	20대 이하	66(10.8)	17(25.8)	41(62.1)	6(9.1)	2(3.)	-
	20대	246(40.3)	73(29.7)	127(51.6)	41(16.7)	2(0.8)	3(1.2)
	30대	126(20.6)	37(29.4)	70(55.6)	13(10.3)	4(3.2)	2(1.6)
	40대	103(16.9)	25(24.3)	57(55.3)	15(14.6)	3(2.9)	3(2.9)
	50대	47(7.7)	17(36.2)	24(51.1)	3(6.4)	3(6.4)	-
	60대	20(3.3)	4(20.2)	10(50.0)	4(20.0)	2(10.0)	-
	70대 이상	3(0.5)	-	1(33.3)	1(33.3)	1(33.3)	-
합 계	611(100)	173(28.3)	330(54.0)	83(13.6)	17(2.8)	8(1.3)	
학 력	초졸 이하	9(1.5)	1(11.1)	8(88.9)	-	-	-
	중졸 이하	27(4.5)	7(25.9)	12(44.4)	5(18.5)	3(11.1)	-
	고졸 이하	294(49.2)	79(26.9)	158(53.7)	47(16.0)	7(2.4)	3(1.0)
	대졸 이하	259(43.3)	77(29.7)	144(55.6)	27(10.4)	6(2.3)	5(1.9)
	대학원 이상	8(1.3)	3(37.5)	4(50.0)	1(12.5)	-	-
	합 계	597(100)	167(28.0)	326(54.6)	80(13.4)	16(2.7)	8(1.3)
소 득	100만원 미만	71(12.2)	23(32.4)	36(50.7)	10(14.1)	2(2.8)	-
	100~149만원	99(17.0)	27(27.3)	52(52.5)	16(16.2)	2(2.0)	2(2.0)
	150~199만원	99(17.0)	32(33.7)	44(46.3)	11(14.7)	3(3.2)	2(2.1)
	200~249만원	78(13.4)	22(28.2)	44(56.4)	11(14.1)	1(1.3)	-
	250~299만원	56(9.6)	11(19.6)	39(69.6)	6(10.7)	-	-
	300~349만원	39(6.7)	11(28.2)	22(56.4)	3(7.7)	2(5.1)	1(2.6)
	350~399만원	30(5.1)	6(20.0)	17(56.7)	4(13.3)	2(6.7)	1(3.3)
	400만원 이상	54(9.3)	15(27.8)	30(55.6)	8(14.8)	-	1(1.9)
	기 타	61(10.5)	19(31.1)	29(47.5)	8(13.1)	4(6.6)	1(1.4)
	합 계	583(100)	166(28.5)	313(53.7)	80(13.7)	16(2.7)	8(1.4)

■ 경찰의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

-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3> 경찰의 불시검문을 허용하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315(51.6)	14(4.4)	33(10.5)	32(10.2)	128(40.6)	108(34.3)
	여	296(48.4)	8(2.7)	27(9.1)	39(13.2)	143(48.3)	79(26.7)
	합 계	611(100)	22(3.6)	60(9.8)	71(11.6)	271(44.4)	187(30.6)
연 령	20대 이하	66(10.8)	2(3.0)	8(12.1)	8(12.1)	34(51.5)	14(21.2)
	20대	246(40.3)	16(6.5)	18(7.3)	38(15.4)	90(36.6)	84(34.1)
	30대	126(20.7)	2(1.6)	12(9.5)	8(6.3)	63(50.0)	41(22.0)
	40대	103(16.9)	-	12(11.7)	9(8.7)	50(48.5)	32(31.1)
	50대	47(7.7)	1(2.1)	5(10.6)	61(2.8)	24(51.1)	11(23.4)
	60대	19(3.1)	1(5.3)	5(26.3)	2(10.5)	8(42.1)	3(15.8)
	70대 이상	3(0.5)	-	-	-	2(66.7)	1(33.3)
합 계	610(100)	22(3.6)	60(9.8)	71(11.6)	271(44.4)	186(30.5)	
학 력	초졸 이하	9(1.5)	-	1(11.1)	-	5(55.6)	3(33.3)
	중졸 이하	27(4.5)	1(3.7)	2(7.4)	3(11.1)	16(59.3)	5(18.5)
	고졸 이하	294(49.3)	11(3.7)	33(11.2)	36(12.2)	129(43.9)	85(28.9)
	대졸 이하	258(43.3)	10(3.9)	20(7.8)	29(11.2)	114(44.2)	85(32.9)
	대학원 이상	8(1.3)	-	1(12.5)	1(12.5)	4(50.0)	2(25.0)
	합 계	596(100)	22(3.7)	57(9.6)	69(11.6)	268(45.0)	180(30.2)
소 득	100만원 미만	71(12.2)	3(4.2)	8(11.3)	11(15.5)	29(40.8)	20(28.2)
	100~149만원	98(16.8)	4(4.1)	9(9.2)	9(9.2)	43(43.9)	33(33.7)
	150~199만원	94(16.2)	5(5.3)	7(7.4)	7(7.4)	45(47.9)	30(31.9)
	200~249만원	79(13.6)	5(6.3)	10(12.7)	6(7.6)	35(44.3)	23(29.1)
	250~299만원	56(9.6)	1(1.8)	8(14.3)	5(8.9)	33(58.9)	9(16.1)
	300~349만원	39(6.7)	2(5.1)	3(7.7)	5(12.8)	16(41.0)	13(33.3)
	350~399만원	30(5.2)	-	2(6.7)	2(6.7)	17(56.7)	9(30.0)
	400만원 이상	54(9.3)	1(1.9)	3(5.6)	6(11.1)	19(35.2)	25(46.3)
	기 타	61(10.5)	1(1.6)	7(11.5)	13(21.3)	20(32.8)	25(46.3)
합 계	582(100)	2(23.8)	57(9.8)	64(11.0)	257(44.2)	182(31.3)	

■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 의무화는 옳지 않다

○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4>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317(51.7)	127(40.1)	107(33.8)	42(13.2)	34(10.7)	7(2.2)
	여	296(48.3)	95(32.1)	108(36.5)	49(16.6)	33(11.1)	11(3.7)
	합 계	613(100)	222(36.2)	215(35.1)	91(14.8)	67(10.9)	18(2.9)
연 령	20대 이하	66(10.8)	30(45.5)	22(33.3)	9(13.6)	3(4.5)	2(3.0)
	20대	246(40.2)	102(41.5)	84(34.1)	33(13.4)	21(8.5)	6(2.4)
	30대	127(20.8)	49(38.6)	40(31.5)	19(15.0)	18(14.2)	1(0.8)
	40대	103(16.8)	27(26.2)	44(42.7)	15(14.6)	11(10.7)	6(5.8)
	50대	47(7.7)	8(17.0)	17(36.2)	8(17.0)	12(25.5)	2(4.3)
	60대	20(3.3)	5(25.0)	7(35.0)	5(25.0)	2(10.0)	1(5.0)
	70대 이상	3(0.5)	-	1(33.3)	2(66.7)	-	-
	합 계	612(100)	221(36.1)	215(35.1)	91(14.9)	67(10.9)	18(2.9)
학 력	초졸 이하	9(1.5)	2(22.2)	3(33.3)	1(11.1)	2(22.2)	1(11.1)
	중졸 이하	27(4.5)	2(7.4)	10(37.0)	12(44.4)	2(7.4)	1(3.7)
	고졸 이하	295(49.5)	102(34.6)	104(35.3)	45(15.3)	33(11.2)	11(3.7)
	대졸 이하	259(43.3)	109(42.1)	90(34.7)	28(10.8)	28(10.8)	4(1.5)
	대학원 이상	8(1.3)	3(37.5)	3(37.5)	2(25.0)	-	-
	합 계	598(100)	218(36.5)	210(35.1)	88(14.7)	65(10.9)	17(2.8)
소 득	100만원 미만	71(12.2)	25(35.2)	20(28.2)	16(22.5)	8(11.3)	2(2.8)
	100~149만원	99(17.0)	32(32.3)	41(41.4)	13(13.1)	10(10.1)	3(3.0)
	150~199만원	95(16.3)	30(31.6)	34(35.8)	13(13.7)	14(14.7)	4(4.2)
	200~249만원	79(13.5)	31(39.2)	26(32.9)	14(17.7)	8(10.1)	-
	250~299만원	56(9.6)	15(26.8)	19(33.9)	12(21.4)	6(10.7)	4(7.1)
	300~349만원	39(6.7)	22(56.4)	11(28.2)	2(5.1)	4(10.3)	-
	350~399만원	30(5.1)	9(30.0)	12(40.4)	4(13.3)	4(13.3)	1(3.3)
	400만원 이상	54(9.2)	21(38.9)	17(31.5)	4(7.4)	9(16.7)	3(5.6)
	기 타	61(10.4)	25(41.0)	22(36.1)	11(18.0)	3(4.9)	3(5.6)
	합 계	584(100)	210(36.0)	202(34.6)	89(15.2)	66(11.3)	17(2.9)

■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5> 시위나 집회 자유에 대한 보장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317(51.7)	81(25.6)	133(42.0)	76(24.0)	18(5.7)	9(2.8)
	여	296(48.3)	52(17.6)	144(48.6)	80(27.0)	16(5.4)	4(1.4)
	합 계	613(100)	133(21.7)	277(45.2)	156(25.4)	34(5.5)	13(2.1)
연 령	20대 이하	66(10.8)	20(30.3)	27(40.9)	17(25.8)	-	2(3.0)
	20대	246(40.2)	57(23.2)	112(45.5)	62(25.2)	11(4.5)	4(1.6)
	30대	127(20.8)	24(18.9)	64(50.4)	32(25.2)	7(5.5)	-
	40대	103(16.8)	20(19.4)	45(43.7)	23(22.3)	8(7.8)	7(6.8)
	50대	47(7.7)	7(14.9)	21(44.7)	14(29.8)	5(10.6)	-
	60대	20(3.3)	4(20.0)	7(35.0)	6(30.0)	3(15.0)	-
	70대 이상	3(0.5)	-	1(33.3)	2(66.7)	-	-
	합 계	612(100)	132(21.6)	277(45.3)	156(25.5)	34(5.6)	13(2.1)
학 력	초졸 이하	9(1.5)	-	4(44.4)	5(55.6)	-	-
	중졸이하	27(4.5)	3(11.1)	10(37.0)	11(40.7)	3(11.1)	-
	고졸이하	295(49.3)	70(23.7)	127(43.1)	78(26.4)	11(3.7)	9(3.1)
	대졸이하	259(43.3)	56(21.6)	129(49.8)	56(21.6)	15(5.8)	3(3.1)
	대학원이상	8(1.3)	-	5(62.5)	1(12.5)	2(25.0)	-
	합 계	598(100)	129(21.6)	275(46.0)	151(25.3)	3(15.2)	12(2.0)
소 득	100만원 미만	71(12.2)	16(22.5)	31(43.7)	21(29.6)	3(4.2)	-
	100~149만원	99(17.0)	19(19.2)	37(37.4)	35(35.4)	6(6.1)	2(2.0)
	150~199만원	95(16.3)	19(20.0)	49(51.6)	16(16.8)	8(8.4)	3(3.2)
	200~249만원	79(13.5)	13(16.5)	42(53.2)	19(24.1)	4(5.1)	1(1.3)
	250~299만원	56(9.6)	12(21.4)	30(53.6)	12(21.4)	-	2(3.6)
	300~349만원	39(6.7)	10(25.6)	20(51.3)	8(20.5)	-	1(2.6)
	350~399만원	30(5.1)	5(16.7)	15(50.0)	8(26.7)	1(3.3)	1(3.3)
	400만원 이상	54(9.2)	10(18.5)	21(38.9)	13(24.1)	9(16.7)	1(1.9)
	기 타	61(10.4)	20(32.8)	23(37.7)	15(24.6)	1(1.6)	2(3.3)
	합 계	584(100)	124(21.2)	268(45.9)	147(25.2)	32(5.5)	13(2.2)

■ 사형제도 폐지

○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별에서는 남성 40.8%, 여성39.3%이며, 연령은 40대, 50대, 60대, 20대 이하, 20대 순으로 나타남. 학력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은 아무 상관없이 일정비율로 나타남.

<표 3-6>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314(51.6)	60(19.1)	68(21.7)	67(21.3)	86(27.4)	33(10.5)
	여	295(48.4)	34(11.5)	82(27.8)	75(25.4)	82(27.8)	22(7.5)
	합 계	609(100)	94(15.4)	150(24.6)	142(23.3)	168(27.6)	55(9)
연 령	20대 이하	66(10.9)	9(3.6)	19(28.8)	19(28.8)	14(21.2)	5(7.6)
	20대	246(40.5)	35(4.2)	58(23.6)	69(28.0)	60(24.4)	24(9.8)
	30대	126(20.7)	21(6.7)	28(22.2)	27(21.4)	36(28.6)	14(11.1)
	40대	102(16.8)	15(14.7)	32(31.4)	18(17.6)	27(26.5)	10(9.8)
	50대	46(7.6)	11(23.9)	8(17.4)	61(3.0)	20(43.5)	1(2.2)
	60대	19(3.1)	2(10.5)	4(21.1)	31(5.8)	9(47.4)	1(5.3)
	70대 이상	3(0.5)	-	1(33.3)	-	2(66.7)	-
	합 계	608(100)	93(15.3)	150(24.7)	142(23.4)	168(27.6)	55(9)
학 력	초졸 이하	9(1.5)	-	2(22.2)	1(11.1)	4(44.4)	2(22.2)
	중졸 이하	26(4.4)	41(5.4)	6(23.1)	7(26.9)	8(30.8)	1(3.8)
	고졸 이하	293(49.3)	49(6.7)	67(22.9)	7(26.9)	8(30.8)	23(7.8)
	대졸 이하	258(43.4)	36(14.0)	66(25.6)	55(21.3)	74(28.7)	27(10.5)
	대학원 이상	8(1.3)	2(25.0)	2(25.0)	-	2(25.0)	2(25.0)
	합 계	594(100)	91(15.3)	143(24.1)	141(23.7)	164(27.6)	55(9.3)
소 득	100만원 미만	71(12.2)	15(21.1)	19(26.8)	17(23.9)	16(22.5)	4(5.6)
	100~149만원	98(16.9)	13(13.3)	19(19.4)	28(28.6)	30(30.6)	8(8.2)
	150~199만원	94(16.2)	18(19.1)	23(24.5)	25(26.6)	18(19.1)	10(10.6)
	200~249만원	78(13.4)	11(14.1)	14(17.9)	19(24.4)	22(28.2)	12(15.4)
	250~299만원	56(9.7)	13(23.2)	16(28.6)	8(14.3)	16(28.6)	3(5.4)
	300~349만원	38(6.6)	5(13.2)	9(23.7)	9(23.7)	12(31.6)	3(7.9)
	350~399만원	30(5.2)	1(3.3)	12(40.0)	2(6.7)	11(36.7)	4(13.3)
	400만원 이상	54(9.3)	6(11.1)	11(20.4)	12(22.2)	17(31.5)	8(14.8)
	기 타	61(10.5)	10(16.4)	19(31.1)	13(21.3)	16(26.2)	3(4.9)
	합 계	580(100)	92(15.9)	142(24.5)	133(22.9)	158(27.2)	55(9.5)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소지품 검사 허용정도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소지품검사 허용정도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구분 없이 일정한 비율로 응답을 보이고 있음.

<표 3-7>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소지품 검사하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317(51.9)	34(10.7)	84(26.5)	93(29.3)	76(24.0)	30(9.5)
	여	294(48.1)	32(10.9)	87(29.6)	106(36.1)	61(20.7)	8(2.7)
	합 계	611(100)	66(10.8)	171(28.0)	199(32.6)	137(22.4)	38(6.2)
연 령	20대 이하	66(10.8)	10(15.2)	22(33.3)	22(33.3)	8(12.1)	4(6.1)
	20대	246(40.3)	29(11.8)	69(28.0)	87(35.4)	49(19.9)	1(24.9)
	30대	126(20.7)	10(7.9)	36(28.6)	45(35.7)	25(19.6)	10(7.9)
	40대	102(16.7)	13(12.7)	29(28.4)	26(25.5)	26(25.5)	8(7.8)
	50대	47(7.7)	1(2.1)	12(25.5)	11(23.4)	20(42.6)	3(6.4)
	60대	20(3.3)	2(10.0)	3(15.0)	7(35.0)	7(35.0)	1(2.6)
	70대 이상	3(0.5)	-	-	1(38.3)	2(66.7)	-
	합 계	610(100)	65(10.7)	171(28.0)	199(32.6)	137(22.5)	38(6.2)
학 력	초졸 이하	9(1.5)	1(11.1)	2(22.2)	3(33.3)	3(33.3)	-
	중졸 이하	26(4.4)	2(7.7)	7(26.9)	8(30.8)	8(30.8)	1(3.8)
	고졸 이하	294(49.3)	31(10.5)	82(27.9)	99(33.7)	63(21.4)	19(6.5)
	대졸 이하	259(43.5)	28(10.8)	76(29.3)	81(31.3)	58(22.4)	16(6.2)
	대학원 이상	8(1.3)	1(12.5)	2(25.0)	4(50.0)	1(12.5)	-
	합 계	596(100)	63(10.6)	169(28.4)	195(32.7)	133(22.3)	36(6.0)
소 득	100만원 미만	71(12.2)	12(16.9)	18(25.4)	24(33.8)	13(18.3)	4(5.6)
	100~149만원	98(16.8)	9(9.2)	26(26.5)	33(33.7)	26(26.5)	4(4.1)
	150~199만원	95(16.3)	10(10.5)	31(32.6)	26(27.4)	18(18.9)	10(10.5)
	200~249만원	79(13.6)	8(10.1)	20(25.3)	26(32.6)	19(24.1)	6(7.6)
	250~299만원	56(9.6)	2(3.6)	11(19.6)	20(35.7)	19(33.9)	4(7.1)
	300~349만원	38(6.5)	5(13.2)	9(23.7)	13(34.2)	8(21.1)	3(7.9)
	350~399만원	30(5.2)	3(10.0)	11(36.7)	7(23.3)	7(23.3)	2(6.7)
	400만원 이상	54(9.3)	7(13.0)	17(31.5)	17(31.5)	11(20.4)	2(3.7)
	기 타	61(10.5)	7(11.5)	20(32.8)	20(32.8)	12(19.7)	2(3.3)
합 계	582(100)	63(10.8)	163(28.0)	186(22.9)	133(22.9)	37(6.4)	

■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정도에 대한 일반인 응답결과를 합산하면, 성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목적의 체벌에 허용적이며, 연령대에서는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남. 학력수준에서는 고졸 이하, 대졸 이하, 중졸 이하 순이며, 소득수준별에서는 300~349만원, 350~399만원, 400만원 이상, 200~249만원 순으로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목적에 의한 체벌 허용수준은, 연령이 많은 남성일수록 높으며, 학력은 고졸~대졸이며, 소득수준은 300~400만원을 가지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수준의 사람들이 체벌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경험한 세대들일수록 허용수치가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에 영향을 받아 결과에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고등교육을 경험한 연령들이 고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며, 학교에서의 교육목적의 체벌에 대해서도 허용수치가 높은 것은, 교육이 신분상승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체벌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답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표 3-8>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317(51.7)	53(16.7)	137(43.2)	72(22.7)	40(12.6)	15(4.7)
	여	296(48.3)	26(8.8)	113(38.2)	102(34.5)	45(15.2)	10(3.4)
	합 계	613(100)	79(12.9)	250(40.8)	174(28.4)	85(13.9)	25(4.1)
연 령	20대 이하	66(10.8)	49(6.1)	21(31.8)	27(40.9)	12(18.2)	2(3.0)
	20대	247(40.4)	39(15.8)	99(40.1)	78(31.6)	23(9.3)	89(3.2)
	30대	126(20.6)	9(7.1)	51(40.5)	31(24.6)	28(22.2)	7(5.6)
	40대	103(16.8)	15(14.6)	51(49.5)	18(17.5)	14(13.6)	5(4.9)
	50대	47(7.7)	8(17.0)	23(48.9)	11(23.4)	4(8.5)	1(2.1)
	60대	20(3.3)	4(20.0)	5(25.0)	6(30.0)	3(15.0)	2(0.3)
	70대 이상	3(0.5)	-	-	2(66.7)	1(33.3)	-
합 계	612(100)	79(12.9)	250(40.8)	173(28.3)	85(13.9)	25(4.1)	
학 력	초졸 이하	9(1.5)	-	3(33.3)	3(33.3)	3(33.3)	-
	중졸 이하	27(4.5)	4(14.8)	12(44.4)	7(25.9)	3(11.1)	1(3.7)
	고졸 이하	295(49.3)	42(14.2)	116(39.3)	92(31.2)	31(10.5)	14(4.7)
	대졸 이하	259(43.3)	30(11.6)	112(43.2)	67(25.9)	43(16.6)	14(4.7)
	대학원 이상	8(1.3)	1(12.5)	3(37.5)	1(12.5)	1(12.5)	2(25.0)
	합 계	598(100)	77(12.9)	246(41.1)	170(28.4)	81(13.5)	24(4.0)
소 득	100만원 미만	71(12.2)	11(15.5)	21(29.6)	23(32.4)	10(14.1)	6(8.5)
	100~149만원	98(16.8)	10(10.2)	41(41.8)	34(34.7)	12(12.2)	1(1.0)
	150~199만원	95(16.3)	13(13.7)	36(37.9)	29(30.5)	16(16.8)	1(1.1)
	200~249만원	79(13.6)	11(13.9)	32(40.5)	22(27.8)	9(11.4)	5(6.3)
	250~299만원	56(9.6)	10(17.9)	24(42.9)	10(17.9)	7(12.5)	5(8.9)
	300~349만원	39(6.7)	6(15.4)	18(46.2)	8(20.5)	5(12.8)	2(5.1)
	350~399만원	30(5.1)	1(3.3)	17(56.7)	5(16.7)	6(20.0)	1(3.3)
	400만원 이상	54(9.3)	8(14.8)	23(42.6)	15(27.8)	7(13.0)	1(1.9)
	기 타	61(10.5)	7(11.5)	24(39.3)	19(31.1)	9(14.8)	2(3.3)
합 계	583(100)	77(13.2)	236(40.5)	165(28.3)	81(13.9)	24(4.1)	

■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성별에서는 남자가 68.4%, 연령대에서는 30대부터가 70%이상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 연령대는 병역대기 인원이 가장 많고, 그 이상은 병역필 인원이 많음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음. 학력과 소득은 구분 없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3-9>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정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315(51.6)	19(6.0)	36(11.4)	45(14.3)	108(34.3)	107(34.0)
	여	296(48.4)	8(2.7)	32(10.8)	62(20.9)	144(48.6)	50(16.9)
	합 계	611(100)	27(4.4)	68(11.1)	107(17.5)	252(41.2)	157(25.7)
연 령	20대 이하	65(10.7)	5(7.7)	13(20.0)	18(27.7)	20(30.8)	9(13.8)
	20대	246(40.3)	14(5.7)	31(12.6)	56(22.8)	87(35.4)	58(23.6)
	30대	127(20.8)	4(3.1)	15(11.8)	17(13.4)	52(40.9)	39(30.7)
	40대	102(16.7)	2(2.0)	6(5.9)	7(6.9)	52(51.0)	35(34.3)
	50대	47(7.7)	1(2.1)	2(4.3)	4(8.5)	30(63.8)	10(21.3)
	60대	20(3.3)	1(5.0)	1(5.0)	3(15.0)	9(45.0)	-
	70대 이상	3(0.5)	-	-	1(33.3)	2(6.7)	-
	합 계	610(100)	27(4.4)	68(11.1)	106(17.4)	252(41.3)	157(25.7)
학 력	초졸 이하	9(1.5)	1(11.1)	-	-	7(77.8)	1(11.1)
	중졸 이하	27(4.5)	1(3.7)	3(11.1)	1(3.7)	16(59.3)	6(22.2)
	고졸 이하	294(49.3)	14(4.8)	31(10.5)	59(20.1)	110(37.4)	80(27.2)
	대졸 이하	258(43.3)	9(3.5)	31(12.0)	44(42.3)	109(44.1)	65(25.2)
	대학원 이상	8(1.3)	-	-	-	5(62.5)	3(37.5)
	합 계	596(100)	25(4.2)	65(10.9)	104(17.4)	247(41.4)	155(26)
소 득	100만원 미만	71(12.2)	4(5.6)	9(12.7)	17(23.9)	25(35.2)	16(22.5)
	100~149만원	99(17.0)	3(3.0)	11(11.1)	22(22.2)	36(36.4)	27(27.3)
	150~199만원	94(16.2)	1(1.1)	13(13.8)	14(14.9)	40(42.6)	26(27.7)
	200~249만원	79(13.6)	-	5(6.3)	18(22.8)	35(44.3)	21(26.6)
	250~299만원	56(9.6)	2(3.6)	7(12.5)	4(7.1)	26(46.4)	17(30.4)
	300~349만원	39(6.7)	2(5.1)	2(5.1)	6(15.4)	18(46.2)	11(28.2)
	350~399만원	30(5.2)	-	2(6.7)	1(3.3)	17(56.7)	10(33.3)
	400만원 이상	54(9.3)	6(11.1)	6(11.1)	6(11.1)	19(35.2)	17(31.5)
	기 타	60(10.3)	9(15.0)	8(13.3)	13(21.7)	23(38.3)	7(11.7)
	합 계	582(100)	27(4.6)	63(10.8)	101(17.4)	239(41.1)	152(26.1)

3. 인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인식

인권침해 관련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순위별로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10>, <표 3-11>, <표 3-12>, <표 3-13>, <표 3-14>, <표 3-15>, <표 3-16>, <표 3-17> 과 같음

■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보장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과 구분없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0>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 별	남	46(42.6)	3(6.5)	14(30.4)	6(13.0)	15(32.6)	8(17.4)
	여	62(57.4)	2(3.2)	18(29.0)	14(22.6)	15(24.2)	13(21.0)
	합 계	108(100)	5(4.6)	32(29.6)	20(18.5)	30(27.8)	21(19.4)
연 령	20대 이하	-	-	-	-	-	-
	20대	27(25.0)	14(51.9)	6(29.6)	4(14.8)	1(3.7)	-
	30대	53(49.1)	28(52.8)	23(43.4)	2(3.8)	-	-
	40대	23(21.3)	8(34.8)	11(47.8)	4(17.4)	-	-
	50대	4(3.7)	2(50.0)	2(50.0)	-	-	-
	60대	-	-	-	-	-	-
	70대 이상	1(0.9)	-	1(100)	-	-	-
	합 계	108(100)	52(48.1)	45(41.7)	10(9.3)	1(0.9)	-
활 동 기 간	3년 이하	17(17.0)	9(52.9)	6(35.3)	1(5.9)	1(5.9)	-
	6년 이하	26(26.0)	11(42.3)	11(42.3)	4(15.4)	-	-
	9년 이하	28(28.0)	10(35.7)	17(60.7)	1(3.6)	-	-
	12년 이하	13(13.0)	7(53.8)	3(23.1)	3(23.1)	-	-
	15년 이하	6(6.0)	3(50.0)	2(33.3)	1(16.7)	-	-
	18년 이상	10(10.0)	6(60.0)	4(40.0)	-	-	-
	합 계	100(100)	48(48.0)	43(43.0)	10(10.0)	1(1.0)	-
직 책	실무 간사	42(44.7)	17(40.5)	19(45.2)	6(14.3)		
	실무책임자	38(40.4)	21(55.3)	15(39.4)	2(5.3)		
	대 표	14(14.9)	7(50.0)	5(35.7)	2(14.3)		
	합 계	94(100.0)	45(47.9)	39(41.5)	10(10.6)		

■ 경찰의 불신검문에 대한 허용

-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응답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11> 경찰의 불시검문을 허용하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	2(4.3)	3(6.5)	17(37.0)	24(52.2)
	여	62(57.4)	2(3.2)	3(4.8)	4(6.5)	19(30.6)	34(54.8)
	합 계	108(100)	2(1.9)	5(4.6)	7(6.5)	36(33.3)	58(53.7)
연령	20대 이하	-	-	-	-	-	-
	20대	27(25.0)	1(3.7)	1(3.7)	3(11.1)	11(40.7)	11(40.7)
	30대	53(49.1)	1(1.9)	1(1.9)	2(3.8)	14(26.4)	35(66.0)
	40대	23(21.3)	-	2(8.7)	2(8.7)	9(39.1)	10(43.5)
	50대	4(3.7)	-	1(25.0)	-	1(25.0)	2(50.0)
	60대	-	-	-	-	-	-
	70대 이상	1(0.9)	-	-	-	1(100.0)	-
합 계	108(100)	2(1.9)	5(4.6)	7(6.5)	36(33.3)	58(53.7)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1(5.9)	1(5.9)	-	5(29.4)	10(58.8)
	6년 이하	26(26.0)	-	1(3.8)	4(15.4)	11(42.3)	10(38.5)
	9년 이하	28(28.0)	-	1(3.6)	2(7.1)	9(32.1)	16(57.1)
	12년 이하	13(13.0)	-	1(7.7)	1(7.7)	4(30.8)	7(53.8)
	15년 이하	8(8.0)	-	-	-	2(33.3)	6(66.7)
	18년 이상	8(8.0)	-	1(12.5)	-	2(25.0)	5(62.5)
	합 계	100(100)	1(1.0)	5(5.0)	7(7.0)	34(34.0)	54(54.0)
직책	실무 간사	42(44.7)	-	3(7.1)	3(7.1)	17(40.5)	19(45.2)
	실무책임자	38(40.4)	-	2(5.3)	2(5.3)	12(31.6)	22(57.9)
	대 표	14(14.9)	-	-	2(14.3)	4(28.6)	8(57.1)
	합 계	94(100)	-	5(5.3)	7(7.4)	33(35.1)	49(52.1)

■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 의무화는 옳지 않다

○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12> 종교재단 학교에서 종교의식 의무화의 부당성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 단체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16(34.8)	28(60.9)	2(4.3)	-	-
	여	62(57.4)	19(31.1)	31(50.8)	7(11.5)	3(4.9)	1(1.6)
	합 계	108(100)	35(32.7)	59(55.1)	9(8.4)	3(2.8)	1(0.9)
연령	20대 이하	-	-	-	-	-	-
	20대	27(25.0)	15(55.6)	6(22.2)	4(14.8)	1(3.7)	6(3.7)
	30대	53(49.1)	26(49.1)	19(35.8)	7(13.2)	-	1(1.9)
	40대	23(21.3)	7(30.4)	7(30.4)	3(13.0)	6(26.1)	-
	50대	4(3.7)	1(25.0)	2(50.0)	-	1(25.0)	-
	60대	-	-	-	-	-	-
	70대 이상	1(0.9)	-	-	1(100)	-	-
합 계	108(100)	49(45.4)	34(31.5)	15(13.9)	8(7.4)	2(1.9)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9(52.9)	5(29.4)	3(17.6)	-	-
	6년 이하	26(26.0)	10(38.5)	6(23.1)	7(26.9)	3(11.5)	-
	9년 이하	28(28.0)	12(42.9)	10(35.7)	3(10.7)	2(7.1)	1(3.6)
	12년 이하	13(13.0)	5(38.5)	7(53.8)	-	1(7.7)	-
	15년 이하	6(6.0)	4(66.7)	1(16.7)	-	1(16.7)	-
	18년 이상	10(10.0)	6(60.0)	1(10.0)	2(20.0)	1(10.0)	-
	합 계	100(100)	46(46.0)	30(30.0)	15(15.0)	8(8.0)	1(1.0)
직책	실무간사	42(44.7)	18(42.9)	17(40.5)	6(14.3)	1(2.4)	-
	실무책임자	38(40.4)	20(52.6)	7(18.4)	5(13.2)	5(13.2)	1(2.6)
	대 표	14(14.9)	5(35.7)	4(28.6)	3(21.4)	2(14.3)	-
	합 계	94(100)	43(45.7)	28(29.8)	14(14.9)	8(8.5)	1(1.1)

■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13> 시위나 집회 자유에 대한 보장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23(50.0)	13(28.3)	10(21.7)	-	-
	여	62(57.4)	22(35.5)	26(41.6)	14(22.6)	-	-
	합 계	108(100)	45(41.7)	39(36.1)	24(22.2)	-	-
연령	20대 이하						
	20대	27(25.0)	7(25.9)	11(40.7)	9(33.3)	-	-
	30대	53(49.1)	30(56.5)	15(28.3)	8(15.1)		
	40대	23(21.3)	6(26.1)	12(52.2)	5(21.7)		
	50대	4(3.7)	2(50.0)	1(25.0)	1(25.0)		
	60대	-	-	-	-		
	70대 이상	1(0.9)			1(100)		
합 계	108(100)	45(41.7)	39(36.1)	24(22.2)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7(41.2)	4(23.5)	6(35.3)		
	6년 이하	26(26.0)	8(30.8)	13(50.0)	5(19.2)		
	9년 이하	28(28.0)	10(35.7)	11(39.3)	7(25.0)		
	12년 이하	13(13.0)	8(61.5)	4(30.8)	1(7.7)		
	15년 이하	6(6.0)	4(1.1)	1(16.7)	1(16.7)		
	18년 이상	10(10.0)	6(60.0)	1(10.0)	3(30.0)		
	합 계	100(100)	43(43.0)	34(34.0)	23(23.0)		
직책	실무간사	42(44.7)	13(31.0)	17(40.5)	12(28.6)		
	실무책임자	38(40.4)	19(50.0)	12(31.6)	7(18.4)		
	대 표	14(14.9)	8(57.1)	3(21.4)	3(21.4)		
	합 계	94(100)	40(42.6)	32(34.0)	22(21.4)		

■ 사형제도 폐지

○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직책, 활동기간에 관계없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일부에서 실시하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의 반영이며, 일반인의 생각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3-14> 사형제도 폐지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23(50.0)	13(28.3)	10(21.7)	-	-
	여	62(57.4)	22(35.5)	26(41.6)	14(22.6)	-	-
	합 계	108(100)	45(41.7)	39(36.1)	24(22.2)	-	-
연령	20대 이하						
	20대	27(25.0)	7(25.9)	11(40.7)	9(33.3)	-	-
	30대	53(49.1)	30(56.5)	15(28.3)	8(15.1)		
	40대	23(21.3)	6(26.1)	12(52.2)	5(21.7)		
	50대	4(3.7)	2(50.0)	1(25.0)	1(25.0)		
	60대	-	-	-	-		
	70대 이상	1(0.9)			1(100)		
합 계	108(100)	45(41.7)	39(36.1)	24(22.2)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7(41.2)	4(23.5)	6(35.3)		
	6년 이하	26(26.0)	8(30.8)	13(50.0)	5(19.2)		
	9년 이하	28(28.0)	10(35.7)	11(39.3)	7(25.0)		
	12년 이하	13(13.0)	8(61.5)	4(30.8)	1(7.7)		
	15년 이하	6(6.0)	4(1.1)	1(16.7)	1(16.7)		
	18년 이상	10(10.0)	6(60.0)	1(10.0)	3(30.0)		
	합 계	100(100)	43(43.0)	34(34.0)	23(23.0)		
직책	실무간사	42(44.7)	13(31.0)	17(40.5)	12(28.6)		
	실무대표	38(40.4)	19(50.0)	12(31.6)	7(18.4)		
	대 표	14(14.9)	8(57.1)	3(21.4)	3(21.4)		
	합 계	94(100)	40(42.6)	32(34.0)	22(21.4)		

■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 허용 결과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비율이 높고, 연령에서는 30~40대, 활동기간, 직책은 구분 없이 반대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3-15>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3(6.5)	14(30.4)	6(13.0)	15(32.6)	8(17.4)
	여	62(57.4)	2(3.2)	18(29.0)	14(22.6)	15(24.2)	13(21.0)
	합 계	108(100)	5(4.6)	32(29.6)	20(18.5)	30(27.8)	21(19.4)
연령	20대 이하	-	-	-	-	-	-
	20대	27(25.0)	1(3.7)	12(44.4)	8(29.6)	3(11.1)	13(11.1)
	30대	53(49.1)	4(7.5)	11(20.8)	6(11.3)	17(32.1)	15(28.3)
	40대	23(21.3)	-	7(30.4)	5(21.7)	8(34.8)	3(13.0)
	50대	4(3.7)	-	2(50.0)	-	2(50.0)	-
	60대	-	-	-	-	-	-
	70대 이상	1(0.9)	-	-	-	1(100)	-
	합 계	108(100)	5(4.6)	32(29.6)	20(18.5)	30(27.8)	21(19.4)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9(52.9)	5(29.4)	3(17.6)	-	-
	6년 이하	26(26.0)	10(38.5)	6(23.1)	7(26.9)	3(11.5)	-
	9년 이하	28(28.0)	12(42.9)	10(35.7)	3(10.7)	2(7.1)	1(3.6)
	12년 이하	13(13.0)	5(38.5)	7(53.8)	-	1(7.7)	-
	15년 이하	6(6.0)	4(66.7)	1(16.7)	-	1(16.7)	-
	18년 이상	10(10.0)	6(60.0)	1(10.0)	2(20.0)	1(10.0)	-
	합 계	100(100)	46(46.0)	30(30.0)	15(15.0)	8(8.0)	1(1.0)
직책	실무간사	42(44.7)	1(2.4)	14(33.3)	9(21.4)	9(21.4)	9(21.4)
	실무대표	38(40.4)	2(5.3)	9(23.7)	7(18.4)	11(28.9)	9(23.7)
	대 표	14(14.9)	1(7.1)	5(35.7)	3(21.4)	3(21.4)	2(14.3)
	합 계	94(100)	4(4.3)	28(29.8)	19(20.2)	23(24.5)	20(21.3)

■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서, 성별, 연령에서는 고르게 일정비율로 나타나며, 활동기간과 직책에서는 3년 이하에서 6년까지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17>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정도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7(15.2)	14(30.4)	8(17.4)	12(26.1)	5(10.9)
	여	62(57.4)	4(6.5)	15(24.2)	17(27.4)	16(25.8)	10(16.1)
	합 계	108(100)	11(10.2)	29(26.9)	25(23.1)	28(25.9)	15(13.9)
연령	20대	27(25.0)	1(3.7)	7(25.9)	7(25.9)	7(25.9)	5(18.5)
	30대	53(49.1)	9(17.0)	14(26.4)	10(18.9)	13(24.5)	7(13.2)
	40대	23(21.3)	1(4.3)	6(26.1)	8(34.8)	6(26.1)	2(8.7)
	50대	4(3.7)	-	2(50.0)	-	1(25.0)	1(25.0)
	60대 이상	1(0.9)	-	-	-	1(3.6)	-
	합 계	108(100)	11(10.2)	29(26.9)	25(23.1)	28(25.9)	15(13.9)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2(11.8)	42(3.5)	2(11.8)	4(23.5)	5(29.4)
	6년 이하	26(26.0)	1(3.8)	2(7.7)	8(30.8)	11(42.3)	4(15.4)
	9년 이하	28(28.0)	2(7.1)	9(32.1)	6(21.4)	8(28.6)	3(10.7)
	12년 이하	13(13.0)	1(7.7)	4(30.8)	5(38.5)	2(15.4)	1(7.7)
	15년 이하	6(6.0)	2(33.3)	23(3.3)	1(16.7)	11(6.7)	-
	18년 이상	10(10.0)	2(20.0)	67(5.0)	-	11(2.5)	1(12.5)
	합 계	100(100)	10(10.0)	27(27.0)	22(22.0)	27(27.0)	14(14.0)
직책	실무간사	42(44.7)	1(2.4)	51(1.9)	14(33.3)	15(35.7)	7(16.7)
	실무대표	38(40.4)	6(15.8)	15(39.5)	3(7.9)	82(1.1)	6(15.8)
	대 표	14(14.9)	1(7.1)	64(2.9)	3(21.4)	42(8.6)	-
	합 계	94(100)	8(8.5)	26(27.7)	20(21.3)	27(28.7)	13(13.8)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소지품 검사 허용정도

○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소지품 검사 허용정도에서,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구분 없이 높게 나타남.

<표 3-16>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소지품 검사하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3.0)	9(19.6)	18(39.1)	14(30.4)	4(8.7)	1(2.2)
	여	61(57.0)	11(18.0)	27(44.3)	18(29.5)	5(8.2)	-
	합 계	107(100)	20(18.7)	45(42.1)	32(29.9)	9(8.4)	1(0.9)
연령	20대	27(25.2)	4(14.8)	10(37.0)	11(40.7)	2(7.4)	-
	30대	53(49.5)	12(22.6)	25(47.2)	12(22.6)	3(5.7)	1(1.9)
	40대	22(20.6)	4(18.2)	9(40.9)	6(27.3)	3(13.6)	-
	50대	4(3.7)	-	1(25.0)	2(50.0)	12(5.0)	-
	60대	-	-	-	-	-	-
	70대 이상	1(0.9)	-	-	1(3.1)	-	-
	합 계	107(100)	20(18.7)	45(42.1)	32(29.9)	9(8.4)	1(0.9)
활동 경력	3년 이하	17(17.2)	5(29.4)	8(47.1)	3(17.6)	1(5.9)	-
	6년 이하	25(25.3)	2(8.0)	9(36.0)	12(48.0)	2(8.0)	-
	9년 이하	28(28.3)	5(17.9)	14(50.0)	6(21.4)	2(7.1)	1(3.6)
	12년 이하	13(13.1)	3(23.1)	5(38.5)	4(30.8)	1(7.7)	-
	15년 이하	6(6.1)	2(33.3)	1(16.7)	2(33.3)	1(16.7)	-
	18년 이상	10(10.1)	2(20.0)	4(40.0)	3(30.0)	1(10.0)	-
	합 계	99(100)	19(19.2)	41(41.4)	30(30.3)	8(8.1)	1(1.0)
직책	실무간사	41(44.1)	3(7.3)	21(51.2)	14(34.1)	3(7.3)	-
	실무대표	38(40.9)	11(28.9)	12(31.6)	10(26.3)	4(10.5)	1(2.6)
	대 표	14(15.1)	2(14.3)	7(50.0)	4(28.6)	1(7.1)	-
	기 타	-	-	-	-	-	-
	합 계	93(100)	16(17.2)	40(43.0)	28(30.1)	8(8.6)	1(1.0)

제4절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차별이라는 것은 특정한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 현안과 관련된 문항은 9개로, 그간에 우리사회에서 쟁점화되었거나 되고 있는 또는 가능성이 있는 현안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현안을 5점 리커트 척도화해서, 인권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 8인, 법학연구자 3인, 대학원박사과정 6인 등 총 21명에게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만을 검증 받았으며, 일반인 10인, 학생 20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인 등 총 27명에게 사전 테스트만을 실시하였고, 표준화되지 않는 척도임을 밝힘. 이는 앞으로 인권의식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을 밝힘.

1.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1>과 같다.
- 차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보면,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91.9%),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75%),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71.9%),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됨(71.2%),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64.4%),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64.4%),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69.1%), 여성에게, 공무원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57.5%),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28.6%) 순으로 나타남.

- 차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인식을 보면, 장애인이 지하철·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96.4%),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89.9%),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88.0%),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86.2%),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82.6%),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됨(79.8%),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다(79.8%), 여성에게, 공무원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56.9%),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54.1%) 순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일반인 : 91.9%, 시민·사회단체관계자 : 96.4%)가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나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 71.9%, 시민·사회단체관계자 : 89.9%)만 동의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 28.6%,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4.1%로 25.5%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성적소수자에 대해 극단적 의견 차이를 대면하는 결과이며, 앞으로 이러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접근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밖에도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취업·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문항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1>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단위: 명, %)

차별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일반인				시민, 사회단체			
	동의한다	중간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비고	동의한다	중간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비고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 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357 (57.5%)	153 (24.6%)	111 (17.9%)	n=621 (100%)	62 (56.9)	29 (26.6)	18 (16.5)	n=109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443 (71.2%)	131 (21.1)	48 (7.7%)	n=622 (100%)	87 (79.8)	18 (16.5)	4 (3.7)	n=109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400 (64.4%)	153 (24.6%)	68 (11%)	n=621 (100%)	95 (88.0)	60 (55.6)	4 (3.7)	n=108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465 (75%)	100 (16.1%)	55 (8.9%)	n=620 (100%)	94 (86.2)	12 (11.0)	3 (2.8)	n=109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176 (28.6%)	212 (34.4%)	228 (37%)	616 (100%)	59 (54.1)	31 (28.4)	19 (17.4)	n=109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570 (91.9%)	38 (6.1%)	12 (1.9%)	n=620 (100%)	105 (96.4)	4 (13.8)	-	n=109 -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 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446 (71.9%)	124 (20%)	50 (8%)	n=620 (100%)	98 (89.9)	7 (6.4)	4 (3.7)	n=109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78 (12.6%)	114 (18.4%)	428 (69.1%)	n=620 (100%)	6 (5.5)	16 (14.7)	87 (79.8)	n=109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398 (64.4%)	147 (23.8%)	73 (11.8%)	n=618 (100%)	90 (82.6)	13 (11.9)	6 (5.5)	n=109

2. 차별현안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비율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 순위별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 <표 4-3>, <표 4-4>, <표 4-5>, <표 4-6>, <표 4-7>, <표 4-8>, <표 4-9>, <표 4-10>과 같음

■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설치

○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 설치해야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

<표 4-2>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설치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317(51.8)	162(51.1)	123(38.8)	25(7.9)	2(0.6)	5(1.6)
	여	295(48.2)	155(52.5)	122(41.4)	13(4.4)	3(1.0)	2(0.7)
	합 계	612(100)	317(51.8)	245(40.0)	38(6.2)	5(0.8)	7(1.1)
연령	20대 이하	66(10.8)	39(59.1)	25(37.9)	2(3.0)	-	-
	20대	246(40.3)	134(54.5)	93(37.8)	16(6.5)	2(0.8)	1(0.4)
	30대	127(20.8)	70(55.1)	48(37.8)	6(4.7)	2(1.6)	1(0.4)
	40대	102(16.7)	45(44.1)	46(45.1)	7(6.9)	1(1.0)	3(2.9)
	50대	47(7.7)	20(42.6)	24(51.1)	2(4.3)	-	1(5.0)
	60대	20(3.3)	8(40.0)	8(40.0)	3(15.0)	-	1(5.0)
	70대 이상	3(0.5)	-	13(3.3)	2(66.7)	-	-
	합 계	611(100)	316(51.7)	245(40.1)	38(6.2)	5(0.8)	7(1.1)
학력	초졸 이하	9(1.5)	3(33.3)	5(55.6)	1(11.1)	-	-
	중졸 이하	27(4.5)	11(40.7)	14(51.9)	1(3.7)	-	1(3.7)
	고졸 이하	294(49.2)	153(52.0)	118(40.1)	18(6.1)	1(0.3)	4(3.7)
	대졸 이하	259(43.4)	135(52.1)	102(39.4)	16(6.2)	4(1.5)	2(0.8)
	대학원 이상	8(1.3)	56(2.5)	3(37.5)	-	-	-
	합 계	597(100)	307(51.4)	242(40.5)	36(6.0)	5(0.8)	7(1.2)
소득	100만원 미만	71(12.2)	40(56.3)	22(31.0)	8(11.3)	-	1(1.4)
	100~149만원	99(17.0)	46(46.5)	47(47.5)	4(4.0)	1(1.0)	1(1.0)
	150~199만원	95(16.3)	44(46.3)	39(41.1)	8(8.4)	2(2.1)	2(2.1)
	200~249만원	79(13.6)	40(50.6)	33(41.8)	4(5.1)	-	2(2.5)
	250~299만원	55(9.4)	27(49.1)	26(47.3)	1(1.8)	1(1.8)	-
	300~349만원	39(6.7)	24(61.5)	12(30.8)	2(5.1)	1(2.6)	-
	350~399만원	30(5.1)	12(40.0)	18(60.0)	-	-	-
	400만원 이상	54(9.3)	34(63.0)	18(33.3)	2(3.7)	-	-
	기 타	61(10.5)	32(52.5)	21(34.4)	7(11.5)	-	1(1.6)
	합 계	583(100)	299(51.3)	236(40.5)	36(6.2)	5(0.9)	1(1.4)

■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를 대우를 받아야 한다.

○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를 대우를 받아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

<표 4-3> 비정규직 대우문제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316(51.7)	105(33.2)	122(38.6)	54(17.1)	29(9.2)	6(1.9)
	여	295(48.3)	107(36.3)	124(42.0)	45(15.3)	16(5.4)	3(1.0)
	합 계	611(100)	212(34.7)	246(40.3)	99(16.2)	45(7.4)	9(1.5)
연령	20대 이하	66(10.8)	32(48.5)	20(30.3)	8(12.1)	6(9.1)	-
	20대	246(40.3)	95(38.6)	96(39.0)	40(16.3)	12(4.9)	3(1.2)
	30대	126(20.7)	45(35.7)	46(36.5)	23(18.3)	11(8.7)	1(0.8)
	40대	103(16.9)	22(21.4)	51(49.5)	16(15.5)	12(11.7)	2(1.9)
	50대	47(7.7)	15(31.9)	22(46.8)	6(12.8)	3(6.4)	1(2.1)
	60대	19(3.1)	2(10.5)	10(52.6)	5(26.3)	-	2(10.5)
	70대 이상	3(0.5)	-	1(33.3)	1(33.3)	1(33.3)	-
합 계	610(100)	211(34.6)	246(40.3)	99(16.2)	45(7.4)	9(1.5)	
학력	초졸 이하	9(1.5)	2(22.2)	4(44.4)	2(22.2)	1(11.1)	-
	중졸 이하	27(4.5)	6(22.2)	15(55.6)	5(18.5)	1(3.7)	-
	고졸 이하	295(49.5)	116(39.3)	119(40.3)	41(13.9)	1(44.7)	5(1.7)
	대졸 이하	257(43.1)	82(31.9)	102(39.7)	43(16.7)	26(10.1)	5(1.7)
	대학원 이상	8(1.3)	2(25.0)	1(12.5)	3(37.5)	2(25.0)	-
	합 계	596(100)	208(34.9)	241(40.4)	94(15.8)	4(47.4)	9(1.5)
소득	100만원 미만	71(12.2)	30(42.3)	25(35.2)	13(18.3)	1(1.4)	2(2.8)
	100~149만원	98(16.8)	39(39.8)	41(41.8)	7(7.1)	9(9.2)	2(2.0)
	150~199만원	95(16.3)	31(32.6)	37(38.9)	21(22.1)	6(6.3)	-
	200~249만원	79(13.6)	28(35.4)	28(35.4)	11(13.9)	8(10.1)	4(5.1)
	250~299만원	56(9.6)	13(23.2)	30(53.6)	10(17.9)	3(5.4)	-
	300~349만원	38(6.5)	12(31.6)	14(36.8)	8(21.1)	4(10.5)	-
	350~399만원	30(5.2)	11(36.7)	9(30.0)	6(20.0)	4(13.3)	-
	400만원 이상	54(9.3)	17(31.5)	21(38.9)	10(18.5)	5(9.3)	1(1.9)
	기 타	61(10.5)	21(34.4)	28(45.9)	7(11.5)	5(8.2)	-
합 계	582(100)	202(34.7)	233(40.0)	93(16.0)	45(7.7)	9(1.5)	

■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

<표 4-4> 장애인용 시설 의무 설치를 위한 세금 및 요금인상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316(51.6)	109(34.5)	112(35.4)	64(20.3)	22(7.0)	9(2.8)
	여	296(48.4)	82(27.7)	137(46.3)	58(19.6)	16(5.4)	3(1.0)
	합 계	612(100)	191(31.2)	249(40.7)	122(19.9)	38(6.2)	3(1.0)
연령	20대 이하	66(10.8)	19(28.8)	28(42.4)	17(25.8)	1(1.5)	1(1.5)
	20대	246(40.3)	77(31.3)	100(40.7)	51(20.7)	13(5.3)	5(2.0)
	30대	126(20.6)	46(36.5)	47(37.3)	25(19.8)	6(4.8)	2(1.6)
	40대	103(16.9)	26(25.2)	49(47.6)	16(15.5)	9(8.7)	3(2.9)
	50대	47(7.7)	15(31.9)	17(36.2)	8(17.0)	7(14.9)	-
	60대	20(3.3)	7(35.0)	7(35.0)	3(15.0)	2(10.0)	1(5.0)
	70대 이상	3(0.5)	-	13(3.3)	2(66.7)	-	-
합 계	611(100)	190(31.1)	249(40.8)	122(20.0)	38(6.2)	12(2.0)	
학력	초졸 이하	9(1.5)	2(22.2)	4(44.4)	1(11.1)	2(22.2)	-
	중졸 이하	27(4.5)	7(25.9)	82(9.6)	8(29.6)	4(14.8)	-
	고졸 이하	295(49.4)	85(28.8)	114(38.6)	73(24.7)	16(5.4)	7(2.4)
	대졸 이하	258(43.2)	89(34.5)	112(43.4)	37(14.3)	15(5.8)	5(1.9)
	대학원 이상	8(1.3)	3(37.5)	5(62.5)	-	-	-
	합 계	597(100)	186(31.2)	243(40.7)	119(19.9)	37(6.2)	12(2.0)
소득	100만원 미만	70(12.0)	21(30.0)	23(32.9)	16(22.9)	81(1.4)	2(2.9)
	100-149만원	99(17.0)	34(34.3)	33(33.3)	26(26.3)	6(6.1)	-
	150-199만원	95(16.3)	27(28.4)	39(41.1)	21(22.0)	6(6.3)	-
	200-249만원	79(13.6)	21(26.6)	33(41.8)	16(20.3)	6(7.6)	3(3.8)
	250-299만원	56(9.6)	16(28.6)	29(51.8)	9(16.1)	1(1.8)	1(1.8)
	300-349만원	39(6.7)	16(41.0)	16(41.0)	2(5.1)	3(7.7)	2(5.1)
	350-399만원	30(5.1)	10(33.3)	11(36.7)	6(20.0)	2(6.7)	1(3.3)
	400만원 이상	5(49.3)	19(35.2)	23(42.6)	10(18.5)	2(3.7)	-
	기 타	61(10.5)	18(29.5)	27(44.3)	11(18.0)	4(6.6)	1(1.6)
	합 계	583(100)	182(31.2)	234(40.1)	117(20.1)	38(6.5)	12(2.1)

■ 민간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의 부당성

○ 민간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은 부당성하다. 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소득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

<표 4-5> 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의 부당성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316(51.6)	89(28.2)	138(43.7)	59(18.7)	24(7.6)	6(1.9)
	여	296(48.4)	65(22.0)	142(48.0)	71(24.0)	15(5.1)	3(1.0)
	합 계	612(100)	154(25.2)	280(45.8)	130(21.2)	39(6.4)	9(1.5)
연령	20대 이하	66(10.8)	14(21.2)	33(50.0)	15(22.7)	2(3.0)	2(3.0)
	20대	246(40.3)	65(26.4)	108(43.9)	56(22.8)	13(5.3)	4(1.6)
	30대	126(20.6)	37(29.4)	58(46.0)	23(18.3)	8(6.3)	-
	40대	103(16.9)	22(21.4)	47(45.6)	24(23.3)	9(8.7)	1(1.0)
	50대	47(7.7)	7(14.9)	26(55.3)	7(14.9)	5(10.6)	2(4.3)
	60대	20(3.3)	7(35.0)	8(40.0)	3(15.0)	2(10.0)	-
	70대 이상	3(0.5)	1(33.3)	-	2(66.7)	-	-
합 계	611(100)	153(25.0)	280(45.8)	130(21.3)	39(6.4)	9(1.5)	
학력	초졸 이하	9(1.5)	2(22.2)	5(55.6)	1(11.1)	1(11.1)	-
	중졸 이하	27(4.5)	4(14.8)	13(48.1)	7(25.9)	3(11.1)	-
	고졸 이하	295(49.4)	74(25.1)	133(45.1)	65(22.0)	17(5.8)	6(2.0)
	대졸 이하	258(43.2)	63(24.4)	123(47.7)	53(20.5)	16(6.2)	3(1.2)
	대학원 이상	8(1.3)	5(62.5)	1(12.5)	2(25.0)	-	-
합 계	597(100)	148(24.8)	275(46.1)	128(21.4)	37(6.2)	9(1.5)	
소득	100만원 미만	71(12.2)	23(32.4)	35(49.3)	9(12.7)	2(2.8)	2(2.8)
	100-149만원	98(16.8)	25(25.5)	44(44.9)	22(22.4)	5(5.1)	2(2.0)
	150-199만원	95(16.3)	19(20.0)	42(44.2)	25(26.3)	8(8.4)	1(1.1)
	200-249만원	79(13.6)	18(22.8)	37(46.8)	17(21.5)	6(7.6)	1(1.3)
	250-299만원	56(9.6)	11(19.6)	28(50.0)	10(17.9)	6(10.7)	1(1.8)
	300-349만원	39(6.7)	10(25.6)	20(51.3)	9(23.1)	-	-
	350-399만원	30(5.1)	7(23.3)	10(33.3)	10(33.3)	2(6.7)	1(3.3)
	400만원 이상	54(9.3)	12(22.2)	25(46.3)	10(18.5)	6(11.1)	1(1.9)
	기 타	61(10.5)	18(29.5)	29(47.5)	11(18.0)	3(4.9)	1(1.9)
합 계	583(100)	143(24.5)	270(46.3)	123(21.1)	38(6.5)	9(1.5)	

■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취업·납세·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취업·납세·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

<표 4-6>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316(51.6)	54(17.1)	147(46.5)	66(20.9)	33(10.4)	16(5.1)
	여	296(48.4)	49(16.6)	143(48.3)	86(29.1)	16(5.4)	2(0.7)
	합 계	612(100)	103(16.8)	290(47.4)	152(24.8)	49(8.0)	18(2.9)
연령	20대 이하	66(10.8)	11(16.7)	26(39.4)	21(31.8)	6(9.1)	2(11.1)
	20대	246(40.3)	40(16.3)	113(45.9)	65(26.4)	19(7.7)	9(3.7)
	30대	127(20.8)	20(15.7)	73(57.5)	24(18.9)	7(5.5)	3(2.4)
	40대	103(16.9)	17(16.5)	50(48.5)	24(23.3)	11(10.7)	1(1.0)
	50대	46(7.5)	6(13.0)	23(50.0)	12(26.1)	3(6.5)	2(4.3)
	60대	20(3.3)	7(35.0)	5(25.0)	4(20.0)	3(15.0)	2(4.3)
	70대 이상	3(0.5)	1(33.3)	-	2(66.7)	-	-
합 계	611(100)	102(16.7)	290(47.5)	152(24.9)	49(8.0)	18(2.9)	
학력	초졸 이하	9(1.5)	2(22.2)	4(44.4)	3(33.3)	-	-
	중졸 이하	27(4.5)	4(14.8)	10(37.0)	6(22.2)	4(14.8)	3(11.1)
	고졸 이하	294(49.2)	47(16.0)	136(46.3)	80(27.2)	2(37.8)	8(2.7)
	대졸 이하	259(43.4)	42(16.2)	128(49.4)	61(23.6)	2(18.1)	7(2.7)
	대학원 이상	8(1.3)	4(50.0)	3(37.5)	1(12.5)	-	-
	합 계	597(100)	99(16.6)	281(47.1)	151(25.3)	48(8.0)	18(3.0)
소득	100만원 미만	71(12.2)	16(22.5)	24(33.8)	26(36.6)	4(5.6)	1(1.4)
	100~149만원	99(17.0)	16(16.2)	51(51.5)	24(24.2)	8(8.1)	-
	150~199만원	95(16.3)	17(17.9)	50(52.6)	21(22.1)	4(4.2)	3(3.2)
	200~249만원	78(13.4)	13(16.7)	35(44.9)	23(29.5)	6(7.7)	1(1.3)
	250~299만원	56(9.6)	5(8.9)	33(58.9)	13(23.2)	3(5.4)	2(3.6)
	300~349만원	39(6.7)	7(17.9)	20(51.3)	8(20.5)	2(5.1)	2(5.1)
	350~399만원	30(5.1)	2(6.7)	10(33.3)	10(33.3)	4(13.3)	4(13.3)
	400만원 이상	54(9.3)	12(22.2)	29(53.7)	7(13.0)	5(9.3)	1(1.9)
	기 타	61(10.5)	10(16.4)	24(39.3)	12(19.7)	11(18.0)	4(6.6)
합 계	583(100)	98(16.8)	276(47.3)	144(24.7)	47(8.1)	18(3.1)	

■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구분 없이 높게 나타남.

<표 4-7>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315(51.6)	61(19.4)	135(42.9)	72(4.1)	29(9.2)	14(4.4)
	여	296(48.4)	48(16.2)	150(50.7)	70(23.6)	21(7.1)	7(2.4)
	합 계	611(100)	109(17.8)	285(46.6)	146(23.9)	50(8.2)	21(3.4)
연령	20대 이하	66(10.8)	12(18.2)	31(47.0)	20(30.3)	1(1.5)	2(3.0)
	20대	246(40.3)	42(17.1)	114(46.3)	67(27.2)	17(6.9)	6(2.4)
	30대	126(20.7)	28(22.2)	58(46.0)	67(27.2)	17(6.9)	4(3.2)
	40대	103(16.9)	15(14.6)	53(51.5)	18(17.5)	12(11.7)	5(4.9)
	50대	46(7.5)	9(19.6)	21(45.7)	9(19.6)	3(6.5)	4(8.7)
	60대	20(3.3)	3(15.0)	7(35.0)	5(25.0)	5(25.0)	-
	70대 이상	3(0.5)	-	13(3.3)	2(66.7)	-	-
합 계	610(100)	109(17.9)	285(46.7)	145(23.8)	50(8.2)	2(13.4)	
학력	초졸 이하	9(1.5)	-	6(66.7)	2(22.2)	1(11.1)	-
	중졸이하	27(4.5)	5(18.5)	10(37.0)	9(33.3)	2(7.4)	1(3.7)
	고졸이하	294(49.3)	50(17.0)	134(45.6)	79(26.9)	22(7.5)	9(3.1)
	대졸이하	258(43.3)	51(19.8)	126(48.8)	50(19.4)	21(8.1)	9(3.1)
	대학원이상	8(1.3)	1(12.5)	3(37.5)	3(37.5)	1(12.5)	-
	합 계	596(100)	107(18.0)	279(46.8)	143(24.0)	47(7.9)	20(3.4)
소득	100만원 미만	71(12.2)	12(11.4)	30(42.3)	25(35.2)	2(2.8)	2(2.8)
	100~149만원	98(16.8)	17(17.3)	49(50.0)	23(23.5)	7(7.1)	2(2.0)
	150~199만원	95(16.3)	18(18.9)	39(41.1)	26(27.4)	6(6.3)	6(6.3)
	200~249만원	78(13.4)	15(19.2)	36(46.2)	15(19.2)	12(15.4)	-
	250~299만원	56(9.6)	8(14.3)	30(53.6)	13(23.2)	4(7.1)	1(1.8)
	300~349만원	39(6.7)	8(20.5)	20(51.3)	5(12.8)	3(7.7)	3(7.7)
	350~399만원	30(5.2)	5(16.7)	17(56.7)	7(23.3)	-	1(3.3)
	400만원 이상	54(9.3)	8(14.8)	26(48.1)	11(20.4)	6(11.1)	3(5.6)
	기 타	61(10.5)	14(23.0)	24(39.3)	14(23.0)	7(11.5)	2(3.3)
합 계	582(100)	105(18.0)	271(46.6)	139(23.9)	47(8.1)	20(3.4)	

■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에 구분 없이 출신학교 차이 인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이는, 우리사회의 학벌 우선과 학맥중시 풍토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현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

<표 4-8> 출신학교 차이 인정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316(51.6)	16(5.1)	29(9.2)	56(17.7)	104(32.9)	111(35.1)
	여	296(48.4)	8(2.7)	24(8.1)	57(19.3)	142(48.0)	65(22.0)
	합 계	612(100)	24(3.9)	53(8.7)	113(18.5)	246(40.2)	176(28.8)
연령	20대 이하	66(10.8)	2(3.0)	8(12.1)	15(22.7)	22(33.3)	19(28.8)
	20대	246(40.3)	8(3.3)	20(8.1)	51(20.7)	97(39.4)	70(28.5)
	30대	127(20.8)	5(3.9)	8(6.3)	51(20.7)	97(39.4)	36(28.3)
	40대	103(16.9)	5(4.9)	12(11.7)	14(13.6)	39(37.9)	33(32.0)
	50대	47(7.7)	2(4.3)	3(6.4)	4(8.5)	24(51.1)	14(29.8)
	60대	19(3.1)	2(10.5)	1(5.3)	4(21.1)	9(47.4)	3(15.8)
	70대 이상	3(0.5)	-	13(3.3)	-	2(66.7)	-
합 계	611(100)	24(3.9)	53(8.7)	113(18.5)	246(40.3)	175(28.6)	
학력	초졸 이하	9(1.5)	-	2(22.2)	-	4(44.4)	3(33.7)
	중졸 이하	26(4.4)	1(3.8)	5(19.2)	3(11.5)	13(50.0)	4(15.4)
	고졸 이하	295(43.4)	15(5.1)	22(7.5)	58(19.7)	111(37.6)	89(30.2)
	대졸 이하	259(43.4)	6(2.3)	21(8.1)	48(18.5)	111(42.9)	73(28.2)
	대학원 이상	8(1.3)	-	11(2.5)	-	3(37.5)	4(50.0)
	합 계	597(100)	22(3.7)	51(8.5)	109(18.3)	242(40.5)	173(29.0)
소득	100만원 미만	71(12.2)	7(9.9)	8(11.3)	13(18.3)	25(35.2)	18(25.4)
	100~149만원	98(16.8)	2(2.0)	12(12.2)	18(18.4)	41(41.8)	25(25.5)
	150~199만원	95(16.3)	7(7.4)	9(9.5)	12(12.6)	43(45.3)	24(25.3)
	200~249만원	79(13.6)	2(2.5)	1(1.3)	15(19.0)	35(44.3)	26(32.9)
	250~299만원	56(9.6)	-	5(8.9)	13(23.2)	24(42.9)	14(25.0)
	300~349만원	39(6.7)	1(2.6)	4(10.3)	7(17.9)	10(25.6)	17(43.6)
	350~399만원	30(5.1)	-	2(6.7)	3(10.0)	15(50.0)	10(33.3)
	400만원 이상	54(9.3)	3(5.6)	5(9.3)	11(20.4)	19(35.2)	16(29.6)
	기 타	61(10.5)	-	5(8.2)	17(27.9)	21(34.4)	18(29.5)
합 계	583(100)	22(3.8)	51(8.7)	109(18.7)	233(40.0)	168(28.8)	

■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결과는, 성별에서는 여성이 매우 높고, 연령은 구분 없이 높으며, 학력은 중졸에서 대졸까지이며, 수입은 1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경우 중졸이상이 취업가능성이 높고, 임금 수준도 100만원이내에 서를 받고 있음을 예측 할 수 있음.

<표 4-9> 여성할당제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316(51.7)	35(11.1)	112(35.4)	78(24.7)	64(20.3)	27(8.5)
	여	295(48.3)	90(30.5)	115(39.0)	72(24.4)	16(5.4)	2(0.7)
	합 계	611(100)	125(20.5)	227(37.2)	150(24.5)	80(13.1)	29(4.7)
연령	20대 이하	66(10.8)	14(21.2)	26(39.4)	15(22.7)	6(9.1)	5(7.6)
	20대	248(40.7)	55(22.2)	84(33.9)	71(28.6)	26(10.5)	12(4.8)
	30대	125(20.5)	20(16.0)	46(36.8)	34(27.2)	19(15.2)	6(4.8)
	40대	102(16.7)	23(22.5)	41(40.2)	17(16.7)	17(16.7)	4(3.9)
	50대	46(7.5)	8(17.4)	21(45.7)	6(13.0)	10(21.7)	1(2.2)
	60대	20(3.3)	4(20.0)	7(35.0)	6(30.0)	2(10.0)	1(5.0)
	70대 이상	3(0.5)	-	2(66.7)	1(33.3)	-	-
	합 계	610(100)	124(20.3)	227(37.2)	150(24.6)	80(13.1)	29(4.8)
학력	초졸 이하	9(1.5)	-	6(66.7)	2(22.2)	1(11.1)	-
	중졸 이하	26(4.4)	623.1	1142.3	31(1.5)	51(9.2)	1(3.8)
	고졸 이하	294(49.4)	6522.1	12442.2	63(21.4)	27(9.2)	15(5.1)
	대졸 이하	259(43.5)	5019.3	8231.7	72(27.8)	43(16.6)	12(4.6)
	대학원 이상	7(1.2)	-	11(4.3)	34(2.9)	22(8.9)	11(4.3)
	합 계	595(100)	121(20.3)	224(37.6)	143(24.0)	78(13.1)	29(4.9)
소득	100만원 미만	71(12.2)	19(26.8)	24(11.1)	19(13.3)	5(7.0)	4(13.8)
	100~149만원	98(16.9)	22(22.4)	38(38.8)	23(23.5)	9(9.2)	6(6.1)
	150~199만원	95(16.4)	20(21.1)	42(44.2)	21(22.1)	12(12.6)	-
	200~249만원	77(13.3)	14(18.2)	31(40.3)	17(22.1)	10(13.0)	5(6.5)
	250~299만원	55(9.5)	10(18.2)	19(34.5)	17(30.9)	7(12.7)	2(3.6)
	300~349만원	39(6.7)	7(17.9)	12(30.8)	7(17.9)	8(20.5)	5(12.8)
	350~399만원	30(5.2)	5(16.7)	9(30.0)	8(26.7)	7(23.3)	1(3.3)
	400만원 이상	54(9.3)	9(16.7)	17(31.5)	13(24.1)	10(18.5)	5(9.3)
	기 타	61(10.5)	13(21.3)	24(39.3)	18(29.5)	5(8.2)	1(1.6)
	합 계	580(100)	119(20.5)	216(37.2)	143(24.7)	73(12.6)	29(5.0)

■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 결과는, 남성이 반대가 높고, 40대 이상이 높게 나타남. 학력은 저학력일수록 반대가 높고, 고학력일수록 반대비율은 낮으나, 합산하면 반대의견이 많음. 소득은 구분 없이 반대로 나타남. 이는, 아직까지는 우리사회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해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4-10> 동성애자 사회적 인정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312(51.3)	19(6.1)	64(20.5)	92(29.5)	72(23.1)	65(20.8)
	여	296(48.7)	18(6.1)	73(24.7)	118(39.9)	56(18.9)	31(10.5)
	합 계	608(100)	37(6.1)	137(22.5)	210(34.5)	128(21.1)	96(15.8)
연령	20대 이하	66(10.9)	7(10.6)	16(24.2)	25(37.9)	11(16.7)	7(10.6)
	20대	245(40.4)	15(6.1)	71(29.0)	95(38.8)	36(14.7)	28(11.4)
	30대	126(20.8)	7(5.6)	22(17.5)	54(42.9)	22(17.5)	21(16.7)
	40대	103(17.0)	2(1.9)	20(19.4)	25(24.3)	32(31.1)	24(23.3)
	50대	45(7.4)	4(8.9)	4(8.9)	8(17.8)	18(40.0)	11(24.4)
	60대	19(3.1)	2(10.5)	4(21.1)	2(10.5)	6(31.6)	5(26.3)
	70대 이상	3(0.5)	-	-	-	3(2.3)	-
	합 계	607(100)	37(6.1)	137(22.6)	209(34.4)	128(21.1)	96(15.8)
학력	초졸 이하	9(1.5)	1(11.1)	-	2(22.2)	5(55.6)	1(11.1)
	중졸 이하	27(4.6)	1(3.7)	41(4.8)	3(11.1)	11(40.7)	8(29.6)
	고졸 이하	293(49.4)	17(5.8)	70(23.9)	104(35.5)	55(18.8)	47(16.0)
	대졸 이하	256(43.2)	13(5.1)	63(24.6)	95(37.1)	50(19.5)	35(13.7)
	대학원 이상	8(1.3)	2(25.0)	-	2(25.0)	3(37.5)	1(12.5)
	합 계	593(100)	34(5.7)	137(23.1)	206(34.7)	124(20.9)	92(15.5)
소득	100만원 미만	71(12.3)	6(8.5)	18(25.4)	24(33.8)	15(21.1)	8(11.3)
	100~149만원	97(16.8)	4(4.1)	25(25.8)	41(42.3)	17(17.5)	10(10.3)
	150~199만원	93(16.1)	2(2.2)	20(21.5)	30(32.3)	26(28.0)	15(16.1)
	200~249만원	78(13.5)	5(6.4)	20(25.6)	24(30.8)	15(19.2)	14(17.9)
	250~299만원	56(9.7)	4(7.1)	9(16.1)	20(35.7)	11(19.6)	12(21.4)
	300~349만원	39(6.7)	-	13(33.3)	8(20.5)	10(25.6)	8(20.5)
	350~399만원	30(5.2)	-	10(33.3)	12(40.0)	1(3.3)	7(23.3)
	400만원 이상	54(9.3)	7(13.0)	7(13.0)	19(35.2)	10(18.5)	11(20.4)
	기 타	61(10.5)	7(11.5)	13(21.3)	199(31.1)	16(26.2)	6(9.8)
	합 계	579(100)	35(6.0)	135(23.3)	197(34.0)	121(20.9)	91(15.7)

3. 차별현안 심각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인식

차별 관련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관계자의 인식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응답 순위별로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1>, <표 4-12>, <표 4-13>, <표 4-14>, <표 4-15>, <표 4-16>, <표 4-17>, <표 4-18>, <표 4-19>와 같음.

■ 장애인이, 지하철·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이, 지하철·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

<표 4-11>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시설의 의무설치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36(78.3)	7(15.2)	3(6.5)	-	-
	여	62(57.4)	54(87.1)	7(11.3)	1(1.6)	-	-
	합 계	108(100)	90(83.3)	14(13.0)	4(3.7)	-	-
연령	20대	27(25.0)	24(88.9)	2(7.4)	1(3.7)	-	-
	30대	53(49.1)	45(84.9)	8(15.1)	-	-	-
	40대	23(21.3)	19(78.3)	2(8.7)	3(13.0)	-	-
	50대	4(3.7)	3(75.0)	1(25.0)	-	-	-
	60대	-	-	-	-	-	-
	70대 이상	1(0.9)	-	1(100.0)	-	-	-
	합 계	108(100)	90(83.3)	14(13.0)	4(3.7)	-	-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15(88.2)	2(11.8)	-	-	-
	6년 이하	26(26.0)	23(88.5)	3(11.5)	-	-	-
	9년 이하	28(28.0)	24(85.7)	3(10.7)	1(3.6)	-	-
	12년 이하	13(13.0)	10(76.9)	1(7.7)	2(15.4)	-	-
	15년 이하	6(6.0)	5(83.3)	-	1(16.7)	-	-
	18년 이상	10(10.0)	6(60.0)	4(40.0)	-	-	-
	합 계	100(100)	83(83.0)	13(13.0)	4(4.0)	-	-
직책	실무간사	42(44.7)	36(85.7)	5(11.9)	1(2.4)	-	-
	실무대표	38(40.4)	33(86.8)	3(7.9)	2(5.3)	-	-
	대 표	14(14.9)	10(71.4)	3(21.4)	1(7.1)	-	-
	합 계	94(100)	79(84.0)	11(11.7)	4(4.3)	-	-

■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 의무설치해야 한다.

○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

<표 4-12> 장애인용 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세금 및 요금인상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19(41.3)	20(43.5)	6(13.0)	1(2.2)	-
	여	62(57.4)	29(46.8)	25(40.3)	6(3.2)	2(3.2)	-
	합 계	108(100)	48(44.4)	45(41.7)	12(11.1)	3(2.8)	-
연령	20대	27(25.0)	8(29.6)	10(37.0)	8(29.6)	1(3.7)	-
	30대	53(49.1)	25(47.2)	21(39.6)	5(9.4)	2(3.8)	-
	40대	23(21.3)	8(34.8)	11(47.8)	3(13.0)	-	1(4.3)
	50대	4(3.7)	-	2(50.0)	2(50.0)	-	-
	60대 이상	19(9.9)	-	1(100.0)	-	-	-
	합 계	108(100)	41(38.0)	45(41.7)	18(16.7)	3(2.8)	1(0.9)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12(70.6)	5(29.4)	-	-	-
	6년 이하	26(26.0)	8(30.8)	14(53.8)	4(15.4)	-	-
	9년 이하	28(28.0)	8(28.6)	13(46.4)	6(21.4)	1(3.6)	-
	12년 이하	13(13.0)	8(61.5)	3(23.1)	1(7.7)	1(7.7)	-
	15년 이하	6(6.0)	4(66.7)	1(16.7)	1(16.7)	-	-
	18년 이상	10(10.0)	4(40.0)	5(50.0)	-	1(10.0)	-
	합 계	100(100)	44(40.0)	41(41.0)	12(12.0)	3(3.0)	-
직책	실무간사	42(44.7)	18(42.9)	16(38.1)	6(14.3)	2(4.8)	-
	실무대표	38(40.4)	17(44.7)	16(42.1)	5(13.2)	-	-
	대표	14(14.9)	6(42.9)	6(42.9)	1(7.1)	1(7.1)	-
	합 계	94(100)	41(43.6)	38(40.4)	12(12.8)	3(3.2)	-

■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취업·납세·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 장애인에게, 공무원시험·취업·납세·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 할 수 있다.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남.

<표 4-13> 시험, 취업, 납세, 진학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23(50.0)	18(39.1)	4(8.7)	1(2.2)	-
	여	62(57.4)	27(43.5)	29(46.8)	3(4.8)	2(3.2)	1(1.6)
	합 계	108(100)	50(46.3)	47(43.5)	7(6.5)	3(2.8)	1(0.9)
연령	20대	27(25.0)	24(88.9)	2(7.4)	1(3.7)	-	-
	30대	53(49.1)	45(84.9)	8(15.1)	-	-	-
	40대	23(21.3)	18(78.3)	2(8.7)	3(13.0)	-	-
	50대	4(3.7)	3(75.0)	1(25.0)	-	-	-
	60대 이상	1(7.1)	-	1(100)	-	-	-
	합 계	108(100)	90(83.3)	14(13.0)	4(3.7)	-	-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6(35.3)	7(41.2)	3(17.6)	-	1(5.9)
	6년 이하	26(26.0)	10(38.5)	16(61.5)	-	-	-
	9년 이하	28(28.0)	15(53.6)	9(32.1)	2(7.1)	2(7.1)	-
	12년 이하	13(13.0)	7(53.8)	4(30.8)	1(7.7)	1(7.7)	-
	15년 이하	6(6.0)	3(50.0)	2(33.3)	1(16.7)	-	-
	18년 이상	10(10.0)	4(40.0)	6(60.0)	-	-	-
합 계	100(100)	45(45.0)	44(44.0)	7(7.0)	3(3.0)	1(1.0)	
직책	실무간사	42(45.2)	12(28.6)	21(50.0)	6(14.3)	2(4.8)	1(2.4)
	실무대표	37(39.8)	17(45.9)	18(48.6)	1(2.7)	1(2.7)	-
	대 표	14(15.1)	3(21.4)	11(78.6)	-	-	-
	합 계	93(100)	32(34.4)	50(53.8)	7(7.5)	3(3.2)	1(1.1)

■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노동시 동일임금과 대우

-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노동시 동일임금과 대우에 대한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구분 없이 높게 나타남.

<표 4-14>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노동 시 동일임금과 대우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 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19(41.3)	20(43.5)	6(13.0)	1(2.2)	-
	여	62(57.4)	29(46.8)	25(40.3)	6(9.7)	2(3.2)	-
	합 계	108(100)	48(44.4)	45(41.7)	12(11.1)	3(2.8)	-
연령	20대	27(25.0)	13(48.1)	11(40.7)	3(11.1)	-	-
	30대	53(46.1)	27(50.9)	19(35.8)	5(9.4)	2(8)	-
	40대	23(21.3)	7(30.4)	11(47.8)	4(17.4)	1(4.3)	-
	50대	4(3.7)	1(25.0)	3(75.0)	-	-	-
	60대 이상	1(0.9)	-	1(100)	-	-	-
	합 계	108(100)	48(41.7)	45(41.7)	12(11.1)	3(2.8)	-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12(70.6)	5(29.4)	-	-	-
	6년 이하	26(26.0)	8(30.8)	14(53.8)	4(15.4)	-	-
	9년 이하	28(28.0)	8(28.6)	13(46.4)	6(21.4)	1(3.6)	-
	12년 이하	13(13.0)	8(61.5)	3(23.1)	1(7.7)	1(7.7)	-
	15년 이하	6(6.0)	4(66.7)	1(16.7)	1(16.7)	-	-
	18년 이상	10(10.0)	4(40.0)	5(50.0)	-	1(10.0)	-
	합 계	100(100)	44(44.0)	41(41.0)	12(12.0)	3(3.0)	-
직책	실무간사	42(44.7)	18(42.9)	16(38.1)	6(14.3)	2(4.8)	-
	실무대표	38(40.4)	17(44.7)	16(42.1)	5(13.2)	-	-
	대 표	14(14.9)	6(42.9)	6(42.9)	1(7.1)	1(3.2)	-
	합 계	94(100)	41(43.6)	38(40.4)	12(12.8)	3(3.2)	-

■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구분 없이 높게 나타남.

<표 4-15>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17(37.0)	23(50.0)	4(8.7)	2(4.3)	-
	여	62(57.4)	23(37.1)	26(41.9)	9(14.5)	4(6.5)	-
	합 계	108(100)	40(37.0)	49(45.4)	13(12.0)	6(5.6)	-
연령	20대	27(25.0)	6(22.2)	15(55.6)	4(14.8)	2(7.4)	-
	30대	53(49.1)	24(45.3)	23(43.4)	4(7.5)	2(3.8)	-
	40대	23(21.3)	10(43.5)	7(30.4)	5(21.7)	1(4.3)	-
	50대	4(3.7)	-	3(75.0)	-	1(25.0)	-
	60대 이상	1(0.9)	-	1(100.0)	-	-	-
	합 계	108(100)	40(37.0)	49(45.4)	13(12.0)	6(5.6)	-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6(35.3)	8(47.1)	2(11.8)	1(5.9)	-
	6년 이하	26(26.0)	6(23.1)	12(46.2)	5(19.2)	3(11.5)	-
	9년 이하	28(28.0)	10(35.7)	12(42.9)	4(14.3)	2(7.1)	-
	12년 이하	13(13.0)	6(46.2)	6(46.2)	1(7.7)	-	-
	15년 이하	6(6.0)	4(66.7)	1(16.7)	1(16.7)	-	-
	18년 이상	10(10.0)	5(50.0)	5(50.0)	-	-	-
	합 계	100(100)	37(37.0)	44(44.0)	13(13.0)	6(6.0)	-
직책	실무간사	42(44.7)	9(21.4)	25(59.5)	5(11.9)	3(7.1)	-
	실무대표	38(40.4)	20(52.6)	12(31.6)	4(10.5)	2(5.3)	-
	대 표	14(14.9)	5(35.7)	7(50.0)	1(7.1)	1(7.1)	-
	합 계	94(100)	34(36.2)	44(46.8)	10(10.6)	6(6.4)	-

■ 민간 기업에서 직원 채용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민간 기업에서 직원 채용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결과는, 성별, 활동기간, 직책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에서 20대는 중간이다 29.6%, 50대는 동의한다 50%, 중간이다 50%의 결과를 보임.

<표 4-16> 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의 부당성 (단위 :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16(34.8)	20(43.5)	8(17.4)	2(4.3)	-
	여	62(57.4)	25(40.3)	25(40.3)	10(16.1)	1(1.6)	1(1.6)
	합 계	108(100)	41(38.0)	45(41.7)	18(16.7)	3(2.8)	1(0.9)
연령	20대	27(25.0)	8(29.6)	10(37.0)	8(29.6)	1(3.7)	-
	30대	53(49.1)	25(47.2)	21(39.6)	5(9.4)	2(3.8)	-
	40대	23(21.3)	8(34.8)	11(47.8)	3(13.0)	-	1(4.3)
	50대	4(3.7)	-	2(50.0)	2(50.0)	-	-
	60대	1(0.9)	-	1(100.0)	-	-	-
	합 계	108(100)	41(38.0)	45(41.7)	18(16.7)	3(2.8)	1(0.9)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7(41.2)	6(35.3)	4(23.5)	-	-
	6년 이하	26(26.0)	8(30.8)	12(46.2)	6(23.1)	-	-
	9년 이하	28(28.0)	12(42.9)	11(39.3)	2(7.1)	2(7.1)	1(3.6)
	12년 이하	13(13.0)	6(46.2)	4(30.8)	3(23.1)	-	-
	15년 이하	6(6.0)	2(33.3)	2(33.3)	3(33.3)	-	-
	18년 이상	10(10.0)	3(30.0)	6(60.0)	-	1(10.0)	-
	합 계	100(100)	38(38.0)	41(41.0)	17(17.0)	3(3.0)	1(1.0)
직책	실무간사	42(44.7)	12(28.6)	20(47.6)	8(19.0)	1(2.4)	1(2.4)
	실무대표	38(40.4)	17(44.7)	10(26.3)	9(23.7)	2(5.3)	-
	대 표	14(14.9)	5(35.7)	9(64.3)	-	-	-
	합 계	94(100)	34(36.2)	39(41.5)	17(18.1)	3(3.2)	1(1.1)

■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구분 없이 높게 나타남.

<표 4-17> 출신학교 차이 인정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	2(4.3)	8(17.4)	20(43.5)	16(34.8)
	여	62(57.4)	1(1.6)	1(1.6)	10(16.1)	25(40.3)	25(40.3)
	합 계	108(100)	1(0.9)	3(2.8)	18(16.7)	45(41.7)	41(38.0)
연령	20대	27(25.0)	-	-	3(11.1)	11(40.7)	13(48.1)
	30대	53(49.1)	-	2(3.8)	5(9.4)	19(35.8)	27(50.9)
	40대	23(21.3)	-	1(4.3)	4(17.4)	11(47.8)	7(30.4)
	50대	4(3.7)	-	-	-	3(75.0)	1(25.0)
	60대 이상	1(100.0)	-	-	-	1(100.0)	-
	합 계	108(100)	-	3(2.8)	12(11.1)	45(41.7)	48(44.4)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	-	-	5(29.4)	12(70.6)
	6년 이하	26(26.0)	-	-	4(15.4)	14(53.8)	8(30.8)
	9년 이하	28(28.0)	-	1(3.6)	6(21.4)	13(46.4)	8(28.6)
	12년 이하	13(13.0)	-	1(3.6)	1(7.7)	3(23.1)	8(61.5)
	15년 이하	6(6.0)	-	-	7(16.7)	1(16.7)	4(66.7)
	18년 이상	10(10.0)	-	1(10.0)	-	5(62.5)	4(40.0)
	합 계	100(100)	-	3(3.0)	12(12.0)	41(51.0)	44(44.0)
직책	실무간사	42(44.7)	-	2(4.8)	6(14.3)	16(38.1)	18(42.9)
	실무대표	38(40.4)	-	-	5(13.2)	16(42.1)	17(44.7)
	대 표	14(14.9)	-	1(7.1)	1(7.1)	6(42.9)	6(42.9)
	합 계	94(100)	-	3(3.2)	12(12.8)	38(40.4)	41(43.6)

■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취업·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취업·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구분 없이 높게 나타남.

<표 4-18> 여성할당제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10(21.7)	17(37.0)	10(21.7)	9(19.6)	-
	여	62(57.4)	16(25.8)	18(29.0)	19(30.6)	9(14.5)	-
	합 계	108(100)	26(24.1)	35(32.4)	29(26.9)	18(16.7)	-
연령	20대	27(25.0)	7(25.9)	10(37.0)	5(18.5)	5(18.5)	-
	30대	53(49.1)	14(26.4)	15(28.3)	17(32.1)	7(13.2)	-
	40대	23(21.3)	5(21.7)	9(39.1)	5(21.7)	4(17.4)	-
	50대	4(3.7)	-	1(25.0)	1(25.0)	2(50.0)	-
	60대 이상	1(0.9)	-	-	1(100.0)	-	-
	합 계	108(100)	26(24.1)	35(32.4)	29(26.9)	18(16.7)	-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4(23.5)	4(3.5)	5(29.4)	4(23.5)	-
	6년 이하	26(26.0)	6(23.1)	11(42.3)	7(26.9)	2(7.7)	-
	9년 이하	28(28.0)	7(25.0)	9(32.1)	6(21.4)	6(21.4)	-
	12년 이하	13(13.0)	5(38.5)	4(30.8)	4(30.8)	-	-
	15년 이하	6(6.0)	2(33.3)	3(33.3)	3(33.3)	-	-
	18년 이상	10(10.0)	1(10.0)	1(10.0)	3(30.0)	4(40.0)	-
	합 계	100(100)	25(25.0)	31(31.0)	28(28.0)	16(16.0)	-
직책	실무간사	42(44.7)	8(19.0)	12(28.6)	15(35.7)	7(16.7)	-
	실무대표	38(40.4)	11(28.9)	13(34.2)	9(23.7)	5(13.2)	-
	대 표	14(14.9)	4(28.6)	5(35.7)	2(14.3)	3(21.4)	-
	합 계	94(100)	23(24.5)	30(31.9)	26(27.7)	15(16.0)	-

■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동성애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 결과는, 성별, 연령, 활동기간, 직책에 구분 없이 일정한 비율을 보이나, 이는 일반인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성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진행 중이나 일반시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4-19> 동성애자 인정 (단위: 명, %)

구 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응답수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중간이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남	46(42.6)	7(15.2)	16(34.8)	15(32.6)	7(15.2)	1(2.2)
	여	62(57.4)	12(19.4)	23(37.1)	16(25.8)	7(11.3)	4(6.5)
	합 계	108(100)	19(17.6)	39(36.1)	31(28.7)	14(13.0)	5(4.6)
연령	20대	27(25.0)	2(7.4)	11(40.7)	10(37.0)	3(11.1)	1(3.7)
	30대	53(49.1)	14(26.4)	17(32.1)	15(28.3)	4(7.5)	3(5.7)
	40대	23(21.3)	3(13.0)	9(39.1)	6(26.1)	5(21.7)	-
	50대	4(3.7)	-	2(50.0)	-	1(25.0)	1(25.0)
	60대 이상	1(100.0)	-	-	-	1(100.0)	-
	합 계	108(100)	19(17.6)	39(36.1)	31(28.7)	14(13.0)	5(4.6)
활동기간	3년 이하	17(17.0)	4(23.5)	2(11.8)	7(41.2)	1(5.9)	3(17.6)
	6년 이하	26(26.0)	3(11.5)	7(26.8)	8(30.8)	8(30.8)	-
	9년 이하	28(28.0)	5(17.9)	12(42.9)	7(25.0)	2(7.1)	2(7.1)
	12년 이하	13(13.0)	5(38.5)	4(30.8)	4(30.8)	-	-
	15년 이하	6(6.0)	2(33.3)	2(33.3)	1(16.7)	1(16.7)	-
	18년 이상	10(10.0)	-	8(80.0)	1(25.0)	1(25.0)	-
	합 계	100(100)	19(19.0)	35(35.0)	28(28.0)	13(13.0)	5(5.0)
직책	실무 간사	42(44.7)	5(11.9)	11(26.2)	17(40.5)	6(14.3)	3(7.1)
	실무대표	38(40.4)	10(26.3)	15(39.5)	6(15.8)	6(15.8)	1(2.6)
	대 표	14(14.9)	2(14.3)	7(50.0)	3(21.4)	2(14.3)	-
	합 계	94(100)	17(18.1)	33(35.1)	26(27.7)	14(14.9)	4(4.3)

제5절 인권문제 유형에 대한 인식

1.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인식

-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사항을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5-1>, <표 5-2>와 같다.
-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사항의 결과, 1순위에서 일반인은 검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 (47.2%),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28.7%),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6.9%),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4.7%)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52.4%),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18.1%),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8.6%),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8.6%),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4.8%)순으로 나타남.

<표 5-1> 인권침해의 유형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침해 의 유형	검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 심문하는 문제	281	47.2	55	52.4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170	28.7	19	18.1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28	4.7	5	4.8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29	4.9	2	1.9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41	6.9	9	8.6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28	4.7	9	8.6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 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14	2.4	-	-
	기타	4	0.7	6	5.7
	합 계	595	100.0	105	100.0

- 아울러 2순위에서는,

-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사항의 결과, 일반인은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29.8%), 검찰·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22.0%),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13.3%),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10.1),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10.1%),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8.7%)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경우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30.7%), 검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 (15.8%),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13.9%),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11.9%),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10.9%)순으로 나타남.

<표 5-2> 인권침해의 유형 (2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침해 의 유형	검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	127	22.0	16	15.8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172	29.8	31	30.7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58	10.1	11	10.9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58	10.1	12	11.9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77	13.3	8	7.9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50	8.7	14	13.9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 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34	5.9	7	6.9
	기타	1	0.2	2	2.0
	합 계	577	100.0	101	100.0

2. 차별 유형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차별유형을 순서대로 응답하게 한 중복응답결과는 <표 5-3>, <표 5-4>와 같다.
- 일반시민의 경우, 1순위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23.1%),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23.1%),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4.3%),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1.0%),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6.4%)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32.1%),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20.2%),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0.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8.3%),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8.3%)순으로 나타남.
- 아울러 2순위에서는,
 - 일반시민의 경우는,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9.3%),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4.6%),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3.6%),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0.04%),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8.5%)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21.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7.4%),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4.7%),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11.0%),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7.3%)순으로 나타남.
 - 1, 2순위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나, 성차별, 장애차별, 나이차별, 학력·학벌차별, 비정규직차별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3> 지역사회 일어나는 차별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40	23.1	35	32.1
종교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1	1.8	3	2.8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40	23.1	22	20.2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9	6.4	9	8.3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87	14.3	11	10.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67	11.0	9	8.3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1	5.1	2	1.8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나 민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8	3.0	7	6.4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1	3.5	-	-
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재혼, 사실혼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6	1.0	1	0.9
한 부모가족(편부, 편모), 미혼모 가족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7	1.2	2	1.8
사상,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3	2.1	3	2.8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2	2.0	3	2.8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	0.3	-	-
과거,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	0.5	-	-
임신, 출산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7	1.0	1	0.9
기타	3	0.5	1	0.9
합 계	607	100.0	109	100.0

<표 5-4>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 (2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차별 유형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54	8.5	12	11.0
	종교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0	3.3	5	4.6
	장애를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82	13.6	23	21.1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60	10.0	8	7.3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16	19.3	16	14.7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88	14.6	19	17.4
	출신지역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42	7.0	4	3.7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나 민족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4	2.3	7	6.4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4	5.7	2	1.8
	결혼,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재혼, 사실혼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26	4.3	1	0.9
	한 부모가족(편부, 편모), 미혼모 가족 등 가족상황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5	2.5	4	3.7
	사상,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8	1.3	5	4.6
	전과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7	2.8	2	1.8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3	0.5	-	-
	과거,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1	1.8	1	0.9
	임신, 출산을 이유로 받는 부당한 대우	10	1.7	-	-
	기타	1	0.2	-	-
합 계	601	100.0	109	100.0	

3. 지역사회에서의 차별 유형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 유형을 1, 2순위로 중복 응답한 결과는 <표 5-5>, <표 5-6>과 같다.
 - 1순위에서는,
 - 일반시민의 경우,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51.9%),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23.3%),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9.4%),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5.0%),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3.4%)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42.5%),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26.4%),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7.5%),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7.5%),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5.7%) 순으로 나타남.
 -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일반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히,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사회적·물리적 기반이 취약하고, 일자리가 타 지역 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아울러 2순위에서는,
 - 일반시민의 경우,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33.4%), 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18.0%),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14.5%),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11.0%),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차별(10.3%) 순으로 나타남.

-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22.1%),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19.25%),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13.5%),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12.5%),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10.6%),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차별(10.6%),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5.8%),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5.7%)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승진·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일자리의 부족과 물적 토대의 빈약,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결과가 우리지역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표 5-5> 차별유형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역 에서 일어 나는 차별 유형	직원의 모집, 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	310	51.9	45	42.5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139	23.3	28	26.4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20	3.4	8	7.5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용과 관련한 차별	11	1.8	4	3.8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	56	9.4	6	5.7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	30	5.0	8	7.5
	상점, 음식점,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된 차별	8	1.3	1	0.9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차별	18	3.0	5	4.7
	기타	5	0.8	1	0.9
합 계	597	100.0	106	100.0	

<표 5-6> 차별유형 (2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역 에서 일어 나는 차별 유형	직원의 모집, 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	103	18.0	20	19.2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191	33.4	23	22.1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27	4.7	13	12.5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용과 관련한 차별	22	3.8	6	5.8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동사무소	83	14.5	14	13.5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	63	11.0	11	10.6
	상점, 음식점,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된 차별	18	3.1	5	4.8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차별	59	10.3	11	10.6
	기타	6	1.1	1	1.0
합 계	572	100.0	104	100.0	

4.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중복 응답한 결과는 <표 5-7>, <표 5-8>와 같다.
- 1순위에서 일반시민은,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34.9%),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17.9%),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17.4%),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8.4%)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37.0%),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23.1%),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19.4%),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12.0%) 순으로 나타남.
- 아울러 2순위에서는,
 - 일반시민의 경우,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20.9%),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20.5%),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17.3%),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12.9%)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30.6%),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27.8%),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11.1%),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9.3%)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히 언론홍보, 인터넷홍보 등을 매우 선호하며,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력에 대해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생활인으로 함께하는 생활정치 활동을 요구하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음.

<표 5-7> 구제수단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제 수단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212	34.9	40	37.0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106	17.4	21	19.4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45	7.4	1	0.9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109	17.9	25	23.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32	5.3	4	3.7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45	7.4	4	3.7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	51	8.4	13	12.0
	기타	8	1.3	-	-
	합 계	608	100.0	108	100.0

<표 5-8> 구제수단 (2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구제 수단	해당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74	12.9	10	9.3
	청와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진정을 접수한다.	62	10.8	30	27.8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46	8.0	5	4.6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98	17.0	33	30.6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54	9.4	9	8.3
	언론기관에 투고하거나 제보한다.	120	20.9	12	11.1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부당함을 알린다.	118	20.5	8	7.4
	기타	3	0.5	1	0.9
	합 계	575	100.0	108	100.0

제6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관련 사항

1. 지역사무소 위상에 대한 인지정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지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6-1>와 같다.
- 광주지역사무소의 지위를 묻는 결과는 일반인의 경우, 잘 모르겠다(50.6%), 민간기구(18.2%), 독립된 국가기구(15.9%), 대통령 직속기구(12.9%)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독립된 국가기구(46.8%), 대통령 직속기구(28.4%), 잘 모르겠다(11.9%) 순으로 나타남. 이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일반인의 인식차이는 30.9%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6-1> 광주지역사무소의 지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역 사무소 지위	대통령 직속기구	82	12.9	31	28.4
	국무총리 직속기구	11	1.8	7	6.4
	독립된 국가 기구	96	15.9	51	46.8
	민간기구	110	18.2	7	6.4
	잘 모르겠다	306	50.6	13	11.9
	합 계	605	100.0	109	100.0

2.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지역문제 대응방안

1) 지역사무소의 역할

- 광주지역사무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개방형 문항으로 처리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함. 이를 다시 재분류한 응답결과는 <표 6-2>와 같다.
- 일반인의 경우, 잘 모르겠다(28.5%), 인권침해 발생 시 접수, 처리하는 기관(14.2%), 지역 인권사태 파악 및 조사 해결(12.5%), 인권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8.9%), 인권침해·차별을 구제하는 단체(8.9%)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인권침해 발생 시 접수·처리하는 기관(22.9%), 인권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19.2%), 힘없는 사람들 인권 보호하는 국가기관, 인권침해·차별을 구제하는 단체(14.6%), 인권침해·차별을 구제하는 단체(11.9%) 순으로 나타남.

<표 6-2> 지역사무소가 하는 일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역 사무소 가 하는 일	인권침해 발생시 접수·처리하는 기관	48	14.2	25	22.9
	인권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	30	8.9	21	19.2
	인권침해·차별을 구제하는 단체	30	8.9	13	11.9
	지역 인권사태 파악 및 조사 해결	42	12.5	11	10.0
	힘없는 사람들 인권 보호하는 국가기관	28	8.4	16	14.6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인권문제 실태파악 및 범시민운동 주도하는 일	27	8.3	6	5.5
	인권관련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일	25	7.4	8	7.3
	잘 모르겠다	96	28.5	7	6.4
	기타	10	2.9	2	1.8
	합 계	336	100.0	109	100.0

2)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사무소 대응방식

-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사무소의 대응방식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받고 재분류함. 결과는 <표 6-3>과 같다.
- 일반인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일(31.3%), 문제의 원인 규명과 진상규명의 철저한 조사(15.6%),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다(11.7%), 문제발생장소를 압박하여 강력하고 적극적 대응(9.8%), 관련법안에 의한 법률적 대응(9.1%)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문제발생장소를 압박하여 강력하고 적극적 대응(29.3%), 문제의 원인규명과 진상규명의 철저한 조사(16.5%),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다(11.2%),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일(11.0%), 관련법안에 의한 법률적 대응(10.0%)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이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공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 및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요구하는 것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6-3> 지역사무소의 대응방안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 응 방 안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재·조정하는 일	96	31.3	12	11.0
	문제의 원인규명과 진상규명의 철저한 조사	48	15.6	18	16.5
	문제발생장소를 압박하여 강력하고 적극적 대응	30	9.8	32	29.3
	관련 법안에 의한 법률적 대응	28	9.1	11	10.0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36	11.7	12	11.2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게 사전에 교육한다.	22	7.1	8	7.3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합법적인 절차와 사후처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한다.	18	5.8	9	8.2
	홍보·언론활동과 제도적·사회적 대안 마련	23	7.5	6	5.5
	기타	5	1.6	2	1.8
	합 계	306	100.0	109	100.0

3.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인지 정도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결과는 <표 6-4>와 같다.
- 일반시민들의 경우, TV(41.7%), 신문·잡지(13.4%), 인터넷(10.8%), 기타(10.8%) 순으로 언론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65.9%임.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TV(22.4%),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18.7%), 지인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18.7%), 신문·잡지(15.0%), 인터넷(12.1%)순으로 나타남. 언론매체를 통한 경로가 51.4%임.
- 일반인이나 시민·사회단체관계자 공히, 언론매체를 통한 경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원인 중의 하나는,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언론홍보매체의 역할과 위상을 예측할 수 있음.

<표 6-4> 정보경로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보 경로	TV	265	41.7	24	22.4
	라디오	9	1.6	2	1.9
	신문·잡지	76	13.4	16	15.0
	인터넷	61	10.8	13	12.1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12	2.1	8	7.5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24	4.2	20	18.7
	지인 또는 주변사람들을 통해	58	10.2	20	18.7
	기타	61	10.8	4	3.7
	합 계	566	100.0	107	100.0

4.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전화 인지여부

- 상담전화에 대한 인지여부의 결과는 <표 6-5>와 같다.
- 일반시민의 경우, 알고 있다 11.6%, 모른다 83.6%, 이는 72%의 매우 높은 차이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 1331을 모르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알고 있다 43.5%, 모른다 56.5%로 13%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체계적 설치시기의 문제와 홍보 등이며, 앞으로의 적극적 홍보와 전문적인 상담원 배치 및 교육이 필요함을 예측할 수 있음.

<표 6-5> 상담전화 인지여부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현안	알고 있다	74	11.6	47	43.5
	모른다	532	83.6	61	56.5
	합 계	606	100.0	108	100.0

- 알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경로의 결과는, TV·신문·잡지(55.1%), 인권관련 소식지(15.9%), 역전·터미널의 광고안내(13.0%)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인권관련 소식지(37.0%), TV·신문·잡지(28.3%), 지인 또는 주변인(21.7%)순으로 나타남.

<표 6-6> 상담전화 인지경로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담 전화 인지 경로	역전·터미널의 광고안내	9	13.0	1	2.2
	TV·신문·잡지	38	55.1	13	28.3
	인권관련 소식지	11	15.9	17	37.0
	지인 또는 주변사람들의 소개	6	8.7	10	21.7
	기타	5	7.2	5	10.9
	합 계	69	100.0	46	100.0

5. 지역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 광주지역사무소의 앞으로 할일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다양한 제안을 듣고자 함. 이를 재분류한 결과는 <표 6-7>와 같음. 역할과 기능, 확대되어야 될 활동 결과는 <표 6-8>, <표 6-9>와 같음.
- 일반시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광주지역사무소의 역할은, 적극적인 홍보 및 개입(44.5%),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화 상담·면접(13.6%),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본교육(12.7%), 구급·다수인 시설의 수시방문을 통한 현장조사(11.9%)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광주지역사무소의 역할은, 적극적인 홍보 및 개입(42.6%), 구급·다수인 시설의 수시방문을 통한 현장조사(16.0%),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본교육(13.3%),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화 상담·면접(10.6%) 순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홍보·교육·적극적 활동을 요구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아울러, 광주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일반시민의 생각은,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67.8%), 잘 모르겠다(25.0%),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5.4%)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85.5%), 잘 모르겠다(11.8%)로 기능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 확대되어야 할 활동으로는 일반시민의 경우, 교육·홍보 (36.3%),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30.8%), 조사·구제사업(17.9%), 실태조사(13.4%) 순이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34.0%), 조사·구제사업(26.6%), 교육·홍보(20.2%), 실태조사(19.1%) 순으로 나타남.

<표 6-7> 지역사무소의 할 일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지역 사무소 의 할 일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화 상담·면접	32	13.6	8	10.6
	구급·다수인 시설의 수시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28	11.9	12	16.0
	국가인권위원회의 광주지역사무소의 역할 적극적인 홍보 및 개입	105	44.5	32	42.6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구제방법을 알려 준다.	25	10.6	7	9.3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본교육	30	12.7	10	13.3
	인권관련 정보제공	12	5.0	5	6.6
	기타	4	1.6	1	1.3
	합 계	236	100.0	75	100.0

<표 6-8>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402	67.8	94	85.5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11	1.9	1	0.9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2	5.4	2	1.8
	잘 모르겠다	148	25.0	13	11.8
	합 계	593	100.0	110	100.0

<표 6-9> 확대되어야 할 활동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확대 되어야 할 활동	교육·홍보	146	36.3	19	20.2
	실태조사	54	13.4	18	19.1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124	30.8	32	34.0
	조사·구제사업	72	17.9	25	26.6
	기타	6	1.5	-	-
	합 계	402	100.0	94	100.0

제7절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1. 인권교육에 대한 형식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형식이 바람직한지의 결과는, <표 7-1>와 같음.
- 일반인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57.4%),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25.9%),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7.0%)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관계자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50.9%),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27.3%), 기타(10.9%)순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을 이해 할 수 있다.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은 어려서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임을 알 수 있음.

<표 7-1> 인권교육 관련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교육 의 형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	344	57.4	56	50.9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42	7.0	10	9.1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교육	38	6.3	2	1.8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	155	25.9	30	27.3
	기타	20	3.3	12	10.9
	합 계	599	100.0	110	100.0

2.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을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7-2>, <표 7-3>와 같다.
- 일반시민의 경우 1순위에서, 경찰(15.1%),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12.4%), 군인(11.4%),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10.1%), 교도관 등 구금·보호시설 공무원(9.3%)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18.3%),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17.4%),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11.9%),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9.2%) 순으로 나타남.
- 아울러 2순위에서는,
 - 일반시민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14.0%),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11.3%), 교도관등 구금·보호시설 공무원(10.6%) 순으로 나타남.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경우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16.4%), 경찰(15.5%), 학생(12.7%),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12.7%)순으로 나타남.
 - 결과를 합산하면, 국가기구(경찰, 검찰, 구금시설, 공무원 조직, 군인, 의회 및 의원 등)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집계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정신의료시설과 같은 사회적 보호대상자들의 생활·수용시설의 관계자라 할 수 있음.

<표7-2>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교육이 필요한 집단	경찰	96	15.1	9	8.3
	교도관등 구금 보호시설 공무원	56	9.3	9	8.3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51	8.4	13	11.9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44	7.3	10	9.2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48	7.9	9	8.3
	군인	69	11.4	-	-
	방송/신문 등 언론인	29	4.8	4	3.7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61	10.1	20	18.3
	의사,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	5	0.8	1	0.9
	교사	20	3.3	9	8.3
	학생	49	8.1	5	4.6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75	12.4	19	17.4
	기타	2	0.3	1	0.9
	합 계	605	100.0	109	100.0

<표 7-3>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2순위) (단위: 명, %)

구 분	일반인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권 교육이 필요한 집단	경찰	54	9.1	17	15.5
	교도관등 구금 보호시설 공무원	63	10.6	12	10.9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62	10.4	14	12.7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49	8.2	14	12.7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47	7.9	7	6.4
	군인	34	5.7	1	6.4
	방송·신문 등 언론인	42	7.1	-	-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83	14.0	7	6.4
	의사,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	18	3.0	1	0.9
	교사	29	4.9	4	3.6
	학생	42	7.1	14	12.7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67	11.3	18	16.4
	기타	4	0.7	1	0.9
	합 계	594	100.0	110	100.0

□ □

□ □



부

부

인권의식 조사 설문지 (시민·사회단체용)

ID □□□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는 창립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민의 인권의식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지역사회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에 응해주신다면, 지역민의 인권의식함양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전화 (062) 710-9711~6, FAX 710~9717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8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본점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총괄책임 : 이 정 강 소장
실무책임 : 고 애 순
실무담당 : 박 미 정

◎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우리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심각하다
- 5) 매우 심각하다

2】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나아졌다
- 2) 조금 나아졌다
- 3) 1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 4)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3】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곳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군대
- 2) 검찰·경찰
- 3) 국가정보원
- 4)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 5) 요양원·복지원 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 6) 방송 및 언론기관
- 7) 기업 또는 법인 개인회사
- 8)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 9) 지방자치단체
- 10) 각종 사회단체
- 11) 기타 ()

4】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순서대로 두 집단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수용자
- 2) 각종복지시설의 수용자
- 3) 장애인
- 4) 비정규직 노동자
- 5) 여성
- 6) 외국인 노동자
- 7) 노인
- 8) 아동
- 9) 청소년
- 10)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 11) 군인
- 12) 동성애자
- 13)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나 노숙자
- 14) 기타 ()

5】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 곳을 알고 있습니까?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 5-1】 (“알고 있다”답하신 분에 해당) 선생님께서 알고계신 곳을 모두 써 주십시오.

()

6】 우리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한 현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 6-1】 (“알고 있다”답하신 분에 해당)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정책적 사안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사안
- 2)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안
- 3)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사안
- 4)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안
- 5) 기타 ()

7]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신체의 자유
- 2) 사생활 보호
- 3) 개인정보 보호
- 4) 양심의 자유
- 5) 종교의 자유
- 6)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7) 기타 ()

◎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8】 다음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현재 우리지역사회에서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일치하는 부분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동의 한다	③ 중간 이다	④ 반대 한다	⑤ 매우 반대 한다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하는 것이 허용 될 수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 할 수 있다					

문 항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동의 한다	③ 중간 이다	④ 반대 한다	⑤ 매우 반대 한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3】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어떤 기구라고 알고계십니까?

- 1) 대통령 직속기구
- 2) 국무총리 직속기구
- 3) 독립된 국가 기구
- 4) 민간기구
- 5) 잘 모르겠다.

14】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5】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회문제(예를 들면,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 하이스코 노동조합 시위 과잉진압 문제 등등)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6】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고 계십니까?

- 1) TV
- 2) 라디오
- 3) 신문/잡지
- 4) 인터넷
- 5)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 6)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 7) 지인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 8) 기타 ()

1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상담전화 1331을 알고 계십니까?

- 1) 알고 있다.
- 2) 모르고 있다.

☞ 17-1】 (①에 답하신 분에 해당)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1) 역전. 터미널의 광고안내
- 2) TV/ 신문/ 잡지
- 3) 인권관련 소식지
- 4) 지인 또는 주변사람들의 소개
- 5) 기타 ()

18】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9】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2)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 3)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4) 잘 모르겠다.

☞ 19-1】 (①에 답하신 분만 해당)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육, 홍보
- 2) 실태조사
- 3)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 4) 조사·구제 사업
- 5) 기타()

◎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20】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면, 다음은 어떤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 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
- 2)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 3)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교육
- 4)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
- 5) 기타()

21】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곳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경찰
- 2) 교도관등 구금 보호시설 공무원
- 3)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 4)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 5)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 6) 군인
- 7) 방송/신문 등 언론인
- 8)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 9) 의사,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
- 10) 교사
- 11) 학생
- 12)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 13) 기타 ()

◎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 2) 여 3) 기타 ()

2】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2) 불교 3) 가톨릭 4) 유교
5) 원불교 6) 천도교 7) 없음 8) 기타()

3】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1) 기혼 2) 미혼 3) 이혼 4) 사별 5) 동거 6) 기타

4】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5】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

1) 광주 () 2) 전북 ()
3) 전남 () 4) 기타 지역 ()

6】 선생님께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정도)

7】 소속하신 단체에서 선생님의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

8】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명)

9】 선생님께서 속하신 단체의 상근 활동가는 몇 명입니까?

(명)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인권의식 조사 설문지 (일반시민용)

지역: □□ - □□ ID □□□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에서는 창립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민의 인권의식 정도를 파악하여, 우리지역사회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셔서 설문에 응해주신다면, 지역민의 인권의식함양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므로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전화 (062) 710-9711~6, FAX 710~9717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 8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본점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총괄책임 : 이 정 강 소장

실무책임 : 고 애 순

실무담당 : 박 미 정

◎ 현재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 3) 그저 그렇다.
- 4) 대체로 심각하다.
- 5) 매우 심각하다.

2】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나아졌다.
- 2) 조금 나아졌다.
- 3) 1년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 4)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3】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곳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1) 군대
- 2) 검찰 / 경찰
- 3) 국가정보원
- 4)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
- 5) 요양원 / 복지원등의 각종 복지수용시설
- 6) 방송 및 언론기관
- 7) 기업 또는 법인 개인회사
- 8)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기관
- 9) 지방자치단체
- 10) 각종사회단체
- 11) 기타 ()

6】 우리사회에서 인권과 관련한 현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1) 알고 있다. 2) 모른다.

☞ 6-1】 (“알고 있다” 답하신 분에 해당)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정책적 사안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사안
- 2)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사안
- 3)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사안
- 4)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안
- 5) 기타 ()

7】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신체의 자유
- 2) 사생활 보호
- 3) 개인정보 보호
- 4) 양심의 자유
- 5) 종교의 자유
- 6)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7) 기타 ()

◎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8] 다음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일치하는 부분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동의 한다	③ 중간 이다	④ 반대 한다	⑤ 매우 반대 한다
	여성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진학 등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에게 공무원 시험, 취업, 납세, 대학진학 등에서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학생에게 의무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불시에 검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에 갈 의무를 거부 할 수 있다					

문 항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동의 한다	③ 중간 이다	④ 반대 한다	⑤ 매우 반대 한다
장애인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세금이나 요금을 올려서라도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라도 기본적인 권을 보장해야 한다.					
출신학교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다음 각각의 사항 중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유형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응답 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1) 검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심문하는 문제
- 2) 신문, 방송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문제
- 3)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및 생각, 행동할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
- 4)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 5) 공공기관, 언론, 인터넷, 서적 등에 개인의견 표현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 6)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할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
- 7)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개인의 자유로운 학문·예술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 8) 기타 ()

◎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다음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의 평소 생각과 경험에 일치하는 내용을 2순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직원의 모집·채용 등의 고용이나 퇴직에 관련한 차별
- 2) 승진, 직무배치 및 임금과 관련한 차별
- 3)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차별
- 4) 도로나 광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이용과 관련한 차별
- 5) 병원, 금융기관, 주택임대 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
- 6) 동사무소나 법원 등 행정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차별
- 7) 상점, 음식점, 극장, 체육관, 목욕탕 등의 대중시설 이용과 관련된 차별
- 8) 학교의 입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및 교육내용과 관련된 차별
- 9) 기타 ()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3】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어떤 기구라고 알고계십니까?

- 1) 대통령 직속기구
- 2) 국무총리 직속기구
- 3) 독립된 국가 기구
- 4) 민간기구
- 5) 잘 모르겠다.

14】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5】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회문제(예를 들면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 하이스코 노동조합 시위 과잉진압 문제 등등)가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6】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고 계십니까?

- 1) TV
- 2) 라디오
- 3) 신문/잡지
- 4) 인터넷
- 5)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 6)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홍보자료
- 7) 지인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 8) 기타 ()

17】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상담전화 1331을 알고 계십니까?

- 1) 알고 있다.
- 2) 모르고 있다.

☞ 17-1】 (①에 답하신 분에 해당)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1) 역전·터미널의 광고안내
- 2) TV/ 신문/ 잡지
- 3) 인권관련 소식지
- 4) 지인 또는 주변사람들의 소개
- 5) 기타 ()

18】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우리 지역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9】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 2) 역할이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 3) 역할이나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4) 잘 모르겠다.

☞ 19-1】 (①에 답하신 분만 해당)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교육·홍보
- 2) 실태조사
- 3)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
- 4) 조사·구제 사업
- 5) 기타()

◎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20】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면, 다음은 어떤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응답해 주십시오.

- 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교육
- 2)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 3)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원교육
- 4)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
- 5) 기타()

21】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권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곳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 1) 경찰
 - 2) 교도관 등 구금·보호시설 공무원
 - 3) 검찰, 판사, 변호사 등 사법관계자
 - 4) 국가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 5)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 6) 군인
 - 7) 방송/신문 등 언론인
 - 8)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종사자
 - 9) 의사, 교수 등의 전문직 종사자
 - 10) 교사
 - 11) 학생
 - 12)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 13) 기타 ()

※ 통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③ 기타 ()

2】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가톨릭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천도교 ⑦ 없음 ⑧ 기타()

3】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동거 ⑥ 기타

4】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만 세)

5】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광주 ()
② 전북 ()
③ 전남 ()
④ 기타 지역 ()

6】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

7】 선생님의 직업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농/축/수산/광업 ② 판매/ 서비스 종사자
③ 생산/기능/노무직 ④ 자영업
⑤ 사무직 ⑥ 전문/관리/경영직
⑦ 주부 ⑧ 학생
⑨ 무직/퇴직/기타()

8】 선생님께서 어떤 고용형태는 어떤 신가요?

- ① 정규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 ④ 계약직 ⑤ 기타()

9】 선생님 닉의 한달가구소득은 얼마이신가요?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49만원
- ③ 150~199만원 ④ 200~249만원
- ⑤ 250~299만원 ⑥ 300~349만원
- ⑦ 350~399만원 ⑧ 400만원 이상
- ⑨ 기타()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